

# 주요국의 대손세액공제 비교 연구

홍용기·홍성희·김수린

2023. 12.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 연 구 진

### 연구책임자

홍 용 기 부연구위원

### 공동연구원

홍 성 희 공인회계사

김 수 린 세무사

# 목 차

I. 서 론	7
II. 대손세액공제 제도의 개요	9
1. 대손세액공제의 의의	9
2. 대손세액공제 제도 설계 시 고려사항	12
III. 우리나라의 대손세액공제 제도	15
1.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15
가. 현행 규정	15
나. 주요 개정 연혁	21
2. 대손세액공제 신고 현황	24
IV. 주요국의 대손세액공제 제도	29
1. 유럽연합(European Union) 지침	29
가. 대손세액공제 관련 지침	29
나. EU 회원국의 대손세액공제 도입 현황	33
다. 주요 유럽사법재판소 판례	41
2. 영국	46
가. 부가가치세제 개요	46
나. 대손세액공제 제도	47
다. 공급받는 자에 대한 대응조정	54

3. 일본 .....	57
가. 부가가치세(소비세) 개요 .....	57
나. 대손세액공제 제도 .....	58
다. 공급받는 자에 대한 대응조정 .....	64
4. 프랑스 .....	64
가. 부가가치세(Taxe sur la valeur ajoutée) 개요 .....	64
나. 대손세액공제 제도 .....	65
다. 공급받는 자에 대한 대응조정 .....	70
5. 네덜란드 .....	70
가. 부가가치세제 개요 .....	70
나. 대손세액공제 제도 .....	72
다. 공급받는 자에 대한 대응조정 .....	77
6. 호주 .....	79
가. 부가가치세(Goods and Services Tax) 개요 .....	79
나. 대손세액공제 제도 .....	80
다. 공급받는 자에 대한 대응조정 .....	85
V. 국제비교 및 시사점 .....	87
1. 국제비교 .....	87
가. 대손세액공제 제도의 개요 .....	87
나. 대손세액공제 사유 .....	89
다. 대손세액공제 제도 운영방식 .....	95
라. 공급받는 자에 대한 대응조정 .....	99
2. 시사점 .....	101
가. 대손세액공제의 성격에 대한 재고(再考) .....	101
나. 대손세액공제 사유의 독자적 규정 필요 .....	103
다. 대손세액공제 사유의 유형화 .....	106

라. 대손세액공제 기한의 폐지 .....	107
마. 공급받는 자의 장기 미지급채무 관련 매입세액의 반환규정 도입 .....	109
VI. 결론 .....	112
참고문헌 .....	114

## 표 목차

〈표 III-1〉 대손세액공제 제도 주요 개정 연혁 .....	23
〈표 III-2〉 대손세액공제 과세표준 차가감 신고 현황 .....	24
〈표 III-3〉 법인사업자 과세매출 대비 대손세액공제 비율 .....	25
〈표 III-4〉 일반사업자 과세매출 대비 대손세액공제 비율 .....	26
〈표 III-5〉 대손세액공제 매입세액 차가감 신고 현황 .....	27
〈표 IV-1〉 EU 회원국의 대손세액공제 사유 .....	37
〈표 V-1〉 주요국의 대손세액공제 제도 개요 .....	89
〈표 V-2〉 주요국의 대손세액공제 사유 및 시기 .....	94
〈표 V-3〉 주요국의 대손세액공제 제도 운영방식 .....	98
〈표 V-4〉 주요국의 공급받는 자에 대한 대응조정 .....	101

# I. 서론

- 우리나라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회수하지 못하는 사업자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1994년에 대손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함
  -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할 것을 전제로 하나 신고납부의무가 공급자에게 있어서 신용거래로 부가가치세를 먼저 납부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자금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대손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공급대가를 회수하지 못한 사업자는 매출세액만큼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됨
  
- 우리나라는 대손세액공제 제도 도입 이후 제도 활용을 확대하여 도입 당시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법을 몇 차례 개정하여 왔음에도 이와 관련된 논의는 많지 않음
  - 우리나라는 대손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한 이후 적용 범위 및 적용 기한을 점차 확대하였으며, 특히 지난 2020년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함에 따라 향후 제도의 이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됨<sup>1)</sup>
  - 대손세액공제 제도 도입 이후 30여년의 시간이 경과하였으나 제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임
    - 대손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으며 이 중에서도 상당 부분은 최근 화두가 되었던 출자전환 회생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와 관련된 연구임

---

1) 해당 사유가 도입되고 시행시기 이후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채권뿐 아니라 시행시기 이전에 이미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채권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 적용에 제약이 있었으나 2024년부터는 영향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손세액공제 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주요국의 제도와 비교·분석하여 향후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됨
  - 먼저 우리나라의 제도와 연혁을 검토하고 국세통계를 통해 대손세액공제 제도의 활용도에 대해 살펴봄
  - 조사대상국으로는 영국,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를 선정함
    -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도입모델로 평가받는 유럽 부가가치세제의 기반이 되는 유럽연합 부가가치세 지침과 유럽연합 국가 중 대륙법계로 분류되는 프랑스, 비교적 최근 대손세액공제 제도를 개정한 네덜란드를 선정함
    - 또한 유럽연합을 탈퇴한 영국과 우리나라와 법체계가 유사한 것으로 평가받는 일본, 비교적 최근에 현대적 부가가치세 제도를 도입한 호주를 선정함
- 본 보고서는 제 I 장 서론을 포함하여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됨
  - 제 II 장에서는 대손세액공제 제도에 대해서 대략 살펴보고, 제 III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대손세액공제 제도와 주요 연혁, 신고 현황을 살펴 봄
  - 제 IV 장에서는 유럽연합 지침과 영국,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 5개국의 부가가치세 개요 및 공급자 측의 대손세액공제와 이에 대응하는 공급받는 자 측에 대한 조정사항을 조사·정리함
  - 제 V 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주요 5개국 간의 대손세액공제 제도의 국제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대손세액공제 제도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함
  - 마지막으로 제 VI 장에서는 앞서 기술한 II 장부터 V 장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결론을 제시함

## II. 대손세액공제 제도의 개요

### 1. 대손세액공제의 의의

- 부가가치세는 소비세, 간접세로 분류됨<sup>2)</sup>
  - 부가가치세는 소득이 아닌 최종소비자의 소비를 과세 목적으로 함
  -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간접세로 분류됨<sup>3)</sup>
    - 다만, 최종소비자가 아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함
    -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으로 납부하되 자신이 공급받을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함
  
- 부가가치세제는 과세시기에 따라 현금주의회계, 발생주의회계로 구분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부가가치세 도입국은 발생주의회계를 원칙으로 부가가치세제를 운영하고 있음
  - 발생주의회계는 공급받는 자가 공급 이후 이른 시일 내에 공급대가를 지급할 것을 전제로 대가의 수수 여부와는 무관하게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매출세액의 신고·납부,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용함
  - 반면, 현금주의회계는 공급대가의 수수 시점을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공급시기로 봄

---

2) Kristoffersson, Eleonor and Rendahl, Pernilla, 윤지현 외 15인 역(2021), pp. 7~9.

3)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4헌바467 결정

- 유럽연합(이하 “EU”) 회원국, 영국, 호주 등은 발생주의회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부담 완화를 위해 현금주의회계를 특례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음<sup>4)</sup>
  - EU 부가가치세 지침은 발생주의회계를 원칙으로 부가가치세제를 운영하되 중소기업, 특히 매입세액공제권이 없는 최종소비자에게 주로 공급하는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현금주의회계를 허용함<sup>5)</sup>
  - 그 외 영국, 호주 등도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현금주의회계 특례를 운영하고 있음
  
- 발생주의회계 부가가치세제하에서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현금흐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됨
  -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가 공급시기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거래대가를 지급할 것을 전제로 대금의 수수 여부와 무관하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연도에 과세관청에 매출세액을 납부함
  -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공급자이므로, 공급받는 자가 대가를 미지급하는 경우 거래징수자인 공급자가 이를 부담하게 됨
    - 즉, 공급가액뿐만 아니라 공급받는 자가 부담할 것을 전제로 납부한 부가가치세액까지 공급자가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함
  - 공급받는 자의 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공급자까지 현금흐름의 문제를 겪어 연쇄적인 대금 미지급을 야기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제를 운영하는 상당수의 국가들은 대손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공급받는 자가 거래대가를 미지급함에 따라 공급자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조정해 주고 있음

4) 김연화-손혁(2022), pp. 72~78.

5) Explanatory memorandum to the Proposal for a Sixth Council Directive on the harmonization of Member States concerning turnover taxes Common system of value added tax: Uniform basis of assessment COM(73) 950, 20 June 1973, Bulleti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Supplement 11 /73, p. 13.; Van Doesum and Sanderson(2023), p. 8.

- 대손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공급대가도 못 받는 상황에서 공급받는 자로부터 수령할 것을 전제로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의 부담까지 공급자에게 지워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관련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임
- 대손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공급자가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받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자신의 비용으로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실상의 조세 전가 문제가 시정됨<sup>6)</sup>
  - 추가로 공급받는 자의 미지급으로 야기될 수 있는 공급자의 연쇄 부실 가능성을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됨<sup>7)</sup>
- 다만, 부가가치세 제도를 운영하는 모든 국가가 대손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음
  - 브라질, 그리스, 중국, 몽골 등은 대손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sup>8)</sup>
  - 국가가 정당하게 징수한 세금을 사인(私人) 간의 채무불이행 문제로 인해 환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인 것으로 보임
- 한편, 대손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 내에서도 대손세액공제의 성격에 대해서 일관된 견해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임
- EU는 부가가치세 중립성 측면에서 대손세액공제가 정당성을 지니는 것으로 보고 있음
  - 과세표준은 실제로 수령한 대가로 구성되어 결과적으로 과세관청으로부터 부과되는 세액이 납세의무자가 실제로 수령한 금액보다 클 수 없다는 EU 부가가치세의 근본원칙을 확인하는 제도로 대손세액공제를 설명함<sup>9)</sup>

6) 이정란(2019), p. 250.

7) 같은 맥락에서 채코는 채권 미회수의 지속은 여전히 살아있는 채권자에게 경제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아 채권자의 현금흐름 개선 및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2014년에 채무자가 도산과정에 있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함(A-PACK CZ s. r. o. v Odvolací finanční ředitelství, C-127/18 (2019), 6문단)

8) KPMG,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xx/pdf/2020/04/indirect-tax-treatment-of-bad-debts-a-multijurisdictional-analysis.pdf>, 검색일자: 2024. 1. 4.

9) KPMG, <https://kpmg.com/pl/en/home/insights/2020/06/tax-alert-opinion-of-the-advoc>

- 납세의무자는 국가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자로서 공급받는 자(고객)로부터 수령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서는 안 된다는 부가가치세 중립성 원칙의 구현으로 봄
- 이에 더하여 공급자는 국가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한다는 점에서도 대손세액공제의 정당성을 찾는 견해도 있음<sup>10)</sup>
-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손세액공제를 공급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의 특혜인 것으로 보고 있음
  - 법원은 대손세액공제란 조세경감 혜택인 것으로 판시함<sup>11)</sup>
    - 대손세액공제는 사업자의 자금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추후 납부해야 할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주는 조세경감 혜택임
  - 부가가치세법에서 대손세액공제에 대해 ‘공제특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견지로 이해됨<sup>12)</sup>
    - 2013년 6월 부가가치세법 전부개정 시 특례규정임을 명확히 함

## 2. 대손세액공제 제도 설계 시 고려사항

- 대손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발생 가능한 위험으로는 다음의 사항을 상정해 볼 수 있음<sup>13)</sup>

---

ate-general-of-cjeu-to-support-extension-of-the-bad-debt-relief-application-scope.htm  
1, 검색일자: 2024. 1. 4.; Van Doesum(2022), p. 12.

10) Ehrke-Rabel(2023), p. 93.

11)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3855 판결.;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바33 전원 재판부

12)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13) Van Doesum(2022), p. 15.

- 위험 1.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에 대한 조정이 없는 경우의 위험
  - 위험 2.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시점에 공급받는 자의 무재산 및 소재불명 등으로 매입세액 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의 위험
  - 위험 3.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이후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에 대한 조정이 없는 경우의 위험
- 즉, 대손세액공제 제도는 부가가치세의 중립성에 기여하는 장점이 있지만, 발생주의 회계 체계에서 국가의 세수손실 및 거래당사자의 부당이익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있음
- 공급받는 자는 아직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 공급대가를 회수하지 못함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통해 공급자의 납부세액을 감소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가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조정하지 않는 경우 국가의 세수손실로 이어짐
    - 특히 공급받는 자가 파산 등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함
  - 앞서 언급한 위험 2와 위험 3의 경우에는 각각 공급받는 자와 공급자에게 부당이익이 발생함
- 또한, 대손의 불확정성을 고려할 때 대손세액공제의 시기에 대한 정책적 결정이 필요함
- 법률상 더 이상 채권을 회수하지 못함이 확정되는 때에만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것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때에도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함
- 대손세액의 공제시기에 따라 부가가치세 중립성과 세수손실 가능성이 변동될 수 있음<sup>14)</sup>

- 미지급의 확정을 입증하기 전까지는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세수손실 가능성 및 조세회피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 공급자는 채권 회수 전까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자체적으로 선조달(先調達)해야 하므로 사업상 어려움이 야기되며 부가가치세 중립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결국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중립성에 반하지 않는 수준에서 세수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임

### Ⅲ. 우리나라의 대손세액공제 제도

#### 1.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 가. 현행 규정

- 우리나라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거래징수하지 못하고 납부한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sup>15)</sup>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의 외상매출금 등이 법에 정한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음

##### 1) 대손세액공제 사유<sup>16)</sup>

- 대손세액공제 사유는 소득세법<sup>17)</sup> 및 법인세법상 대손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별도로 규정한 사유로 구분할 수 있음
- 법인세법상<sup>18)</sup>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대손세액공제 사유는 다음과 같음
  - 「상법」, 「어음법」, 「수표법」,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어음, 수표, 대여금 및 선급금)

---

15) 「부가가치세법」 제45조

16) 본 보고서에서는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상의 사유로 한정하여 기술함

17)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18)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 소멸시효 완성 이전 채권 회수를 위한 노력이 있었어야 하나<sup>19)</sup> 회수를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실익이 없었다면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sup>20)</sup>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 채무자의 파산,<sup>21)</sup>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부도발생일<sup>22)</sup>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부도발생일 이전의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것은 제외)<sup>23)</sup>
-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이 30만원 이하인 채권

19) 조세심판원 2010. 9. 16.자 2010전0287 결정

20) 심사-부가-2017-0084, 2018. 6. 27.

21)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45-87-9,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 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매출채권 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22)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45-87-8,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 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함. 다만, 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함

23) 2020년 2월 11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 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함

-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승인받았거나 금융감독원장이 대손처리를 요구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금융회사 등의 채권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법인세법 등의 준용규정과 별도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전환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시가의 차액을 대손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음<sup>24)</sup>
- 2019년 해당 규정이 마련되기 전에는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의 차액을 대손세액으로 보아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주식의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지 논란이 되었음
    - 대손세액공제 사유를 법인세법에서 준용하고 있고 법인세법에서는 회생계획인가를 받아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보았기 때문임<sup>25)</sup>
  - 이후 실무상 조세심판례<sup>26)</sup>와 기획재정부 법령해석<sup>27)</sup>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와의 차액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해 오다가 2019년에 법정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규정이 신설됨

## 2) 공급자의 대손세액공제

-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하여 신고하여야 함

2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

25)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의2 단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출자전환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출자전환된 채무의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함

26) 조세심판원 2013. 9. 11.자 2012서1842 결정

27)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3, 2015. 2. 16.

-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사유별로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적용함
  - 예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또는 초과환급신고 가산세가 적용됨<sup>28)</sup>
  - 사업자가 착오 등의 사유로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함<sup>29)</sup>
- 대손세액은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으로 함<sup>30)</sup>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법에 정한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에 한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sup>31)</sup>
-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sup>32)</sup>
  -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대손세액이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이 있음<sup>33)</sup>
- 우리나라는 공급자가 대손 확정 당시에 사업자의 지위에 있어야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 헌법재판소는 사업자의 폐업일 이후에는 과세관청이 매출채권에 관한 대손확정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조세징수 및 세무행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

28)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45-87-3 ①

29)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45-87-11

30)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

3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33) 인천지방법원 2015.11.26. 선고 2014구합2854 판결

할 때 폐업한 사업자에게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의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음<sup>34)</sup>

- 공급자가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수인이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사업양수인은 양수받은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sup>35)</sup>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신설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함<sup>36)</sup>
  -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일 이후에 대손사유가 발생한 매출채권은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지 아니함<sup>37)</sup>
    -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인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sup>38)</sup>
    -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다른 거래처에 대한 공급받은 자의 채권을 지급받은 채권 양수인(공급자) 또한 해당 채권금액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sup>39)</sup>
- 부가가치세법 제7장의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함<sup>40)</sup>

34) 헌법재판소 2011. 11. 29. 선고 2011헌바343 결정

35) 부가 46015-775, 2000. 4. 8.

36)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45-87-5

37) 법규부가 2014-235, 2014. 6. 30.

38) 법규부가 2011-0068, 2011. 3. 15.

39) 사전-2022-법규부가-1051, 2022. 11. 8.; 부가가치세과-1521, 2009. 10. 19.

40)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단서

- 국세청 질의회신에 의하면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후 사업자가 폐업하여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시점에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받았던 대손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음<sup>41)</sup>

### 3) 공급받는 자에 대한 대응조정

-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함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에 한함
    - 따라서 면세사업자나 최종소비자가 공급받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관청은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함
  -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음<sup>42)</sup>
  - 이때 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 또는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sup>43)</sup>
- 공급받은 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함<sup>44)</sup>

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2, 2004. 5. 12.

4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3항

43)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항; 제47조의3 제4항 제2호; 제47조의4 제3항 제2호

44)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4항

## 나. 주요 개정 연혁<sup>45)</sup>

- 우리나라는 1977년 구 부가가치세법<sup>46)</sup>을 최초로 도입할 당시에는 대손세액공제와 관련한 규정이 없었으나 1994년 개정을 통해 구 부가가치세법(법률 제4663호, 1993. 12. 31.) 제17조의2로 신설됨<sup>47)</sup>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부도·파산 등의 사유로 외상매출금과 관련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없어서 대손처리된 경우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sup>48)</sup>
  - 199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음
  
- 도입 당시에는 대손사유가 현재보다 제한적이었으며 공제 적용 가능 기한도 3년으로 현재보다 단기간으로 규정됨<sup>49)</sup>
  - 대손사유는 파산, 강제집행, 사망, 실종선고,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으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대손금 인정 사유와 별도로 규정하였음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세액이 확정되어야 함
  
- 이후 사업자의 자금부담 완화, 세부담 완화를 이유로 여러 차례 대손세액공제의 사유 및 공제 가능 기한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어왔음

4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법령 연혁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46) 법률 제2934호, 1976. 12. 22.

47) 이후 2013년 7월 1일 부가가치세법 전부개정(법률 제11873호, 2013. 6. 7.)으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서 부가가치세법 제45조로 조문 변경하였음

48)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6014&lsId=&efYd=1994010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검색일자: 2023. 12. 19.

49)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081호, 1993. 12. 31.)

- 1996년 7월 1일에는 대손세액공제 사유를 추가하고 공제 가능 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함<sup>50)</sup>
    -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를 사유로 추가함
  - 2006년 2월 9일에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대손사유를 준용하도록 하여 부가가치세법 상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를 확대함<sup>51)</sup>
    - 부가가치세법 상 대손사유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의 대손사유보다 제한적이었으나 개정을 통해 영세자영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2019년 2월 12일에는 회생채권 대손세액을 부가가치세법상 별도의 사유로 추가함<sup>52)</sup>
  - 2020년 2월 11일에는 대손세액 공제 가능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함<sup>53)</sup>
    - 판결, 재판상청구, 압류 등으로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 연장됨에 따라 공급일부부터 5년이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요건을 완화하였음
- 부가가치세법에서 법인세법의 대손사유를 준용한 2006년 이후 법인세법상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소액채권 기준금액을 두 차례에 걸쳐 상향 조정함
    - 2010년 12월 30일에는 소액채권 기준금액을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회수비용 요건<sup>54)</sup>을 삭제함<sup>55)</sup>
    - 2020년 2월 11일에는 소액채권 기준금액을 20만원 이하에서 30만원 이하로 상향함<sup>56)</sup>

50)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5103호, 1996. 7. 1.)

51)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330호, 2006. 2. 9.)

52)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535호, 2019. 2. 12.)

53)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397호, 2020. 2. 11.)

54) 구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516호, 2010. 12. 7.)에서는 회수비용이 해당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어야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였음

55) 구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577호, 2010. 12. 30.)

56) 구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396호, 2020. 2. 11.)

- 2020년 2월 11일에는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를 신설하여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을 대손금 범위에 추가함<sup>57)</sup>
  - 대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 등의 세부담 경감을 위함임

〈표 Ⅲ-1〉 대손세액공제 제도 주요 개정 연혁

시행	사유	공제 기한
1977. 7. 1. 부터	• 부가가치세법 제정 당시 대손세액공제 관련 규정 없음	N/A
1994. 1. 1. 부터	• 파산, 강제집행, 사망, 실종선고,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3년
1996. 7. 1. 부터	•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를 추가함	5년
2006. 2. 9. 부터	• 부가가치세법상의 독자적 사유를 삭제하고 소득세법, 법인세법의 대손사유를 준용하여 대손세액공제 범위를 확대 - 이에 따라 어음법, 수표법,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경매취소 압류채권,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10만원 이하의 채권(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 등이 추가됨	
2011. 1. 1. 부터	•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소액채권 기준금액을 20만원으로 확대하고 회수비용 요건을 삭제함	
2019. 2. 12. 부터	• 회생채권 대손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별도 사유로 추가함	
2020. 2. 11. 부터	•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사유 추가함 •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소액채권 기준금액을 30만원으로 확대함	10년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법령 연혁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57) 구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396호, 2020. 2. 11.)

## 2. 대손세액공제 신고 현황

- 국세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와 일반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에 대손세액공제액을 가감한 건수와 세액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sup>58)</sup>
  - 2022년에 법인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신고한 건수는 5,418건으로 2013년 대비 32%가 감소하였고, 대손세액은 536억원으로 2013년 대비 53%가 감소함
  - 2022년에 일반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신고한 건수는 2,735건으로 2013년 대비 54%가 감소하였고, 대손세액은 107억원으로 2013년 대비 55%가 감소함

〈표 Ⅲ-2〉 대손세액공제 과세표준 차가감 신고 현황

(단위: 인원수, 건수, 백만원)

귀속연도	법인사업자			일반사업자		
	신고인원 <sup>1)</sup>	건수	세액	신고인원 <sup>1)</sup>	건수	세액
2013	621,260	7,969	113,709	3,209,199	5,968	23,828
2014	654,013	6,969	88,661	3,297,704	5,114	21,626
2015	705,581	7,596	103,889	3,472,032	4,921	22,075
2016	754,335	6,641	95,755	3,678,331	4,230	17,767
2017	800,138	6,677	72,985	3,900,526	4,140	17,989
2018	846,823	6,435	68,378	4,068,351	4,090	16,143
2019	900,617	6,484	76,342	4,249,286	3,810	15,423
2020	960,347	6,438	77,256	4,464,458	3,630	14,529
2021	1,022,457	6,357	67,343	4,564,132	3,533	14,862
2022	1,078,946	5,418	53,673	4,792,666	2,735	10,708
합계		66,984	817,991		42,171	174,950

주: 1.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자료는 당초 신고일 이후 통계연보 작성일까지의 변동사항(추가, 정정, 삭제)을 반영한 수치임

1) 신고인원은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인원임

자료: 국세통계포털(<https://tasis.nts.go.kr/>), 국세통계 9-5-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현황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58) 2020년 개정된 회수기일 2년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적용 완화와 코로나19에 따른 실물경기의 둔화로 인하여 대손세액공제 활용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2020년 세법개정 건은 시행시기 해석에 대한 논란, 실물경기 둔화와 대손세액공제 신청 사이의 시차 영향으로 인해 대손세액공제 활용 건수에 대한 영향은 가장 최근의 통계인 2022년 이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대손세액공제 제도는 일반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가 더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과세매출세액 대비 대손세액공제 신고액의 비율은 큰 차이가 없음
- 지난 10년간의 대손세액공제 신고 건수를 비교해보면 일반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가 더 많았음
  - <표 Ⅲ-2>를 통해 지난 10년간 매년 일반사업자 수는 법인사업자 수의 약 5배 이나 대손세액공제를 신고한 건수는 법인사업자가 신고한 건수가 일반사업자에 비해 평균적으로 1.6배 정도 더 많았음을 알 수 있음
  - <표 Ⅲ-3>, <표 Ⅲ-4>를 보면 평균적으로 과세매출 건수 대비 대손세액공제 신고 건수 또한 법인사업자가 0.36%로 0.04%인 일반사업자보다 큼

<표 Ⅲ-3> 법인사업자 과세매출 대비 대손세액공제 비율

(단위: 건수, 백만원)

귀속연도	과세매출 <sup>1)</sup>		대손세액공제		대손세액공제 비율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2013	1,433,853	240,880,037	7,969	113,709	0.56%	0.05%
2014	1,534,552	245,540,014	6,969	88,661	0.45%	0.04%
2015	1,657,676	247,180,661	7,596	103,889	0.46%	0.04%
2016	1,785,805	255,205,687	6,641	95,755	0.37%	0.04%
2017	1,904,971	277,255,769	6,677	72,985	0.35%	0.03%
2018	2,017,147	290,841,323	6,435	68,378	0.32%	0.02%
2019	2,136,318	296,751,586	6,484	76,342	0.30%	0.03%
2020	2,260,617	298,465,858	6,438	77,256	0.28%	0.03%
2021	2,399,735	340,673,341	6,357	67,343	0.26%	0.02%
2022	2,530,086	389,024,135	5,418	53,673	0.21%	0.01%
평균	1,966,076	288,181,841	6,698	81,799	0.36%	0.03%

주: 1.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자료는 당초 신고일 이후 통계연보 작성일까지의 변동사항(추가, 정정, 삭제)을 반영한 수치임

1) 과세매출에는 세금계산서발급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기타(정규 영수증 외 매출분), 예정신고 누락분 과세분을 포함함

자료: 국세통계포털, 국세통계 9-5-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현황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 그러나 평균적으로 과세매출세액 대비 대손세액공제 신고액의 비율은 일반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비슷하게 나타남
- <표 III-3>, <표 III-4>에서 과세매출세액 대비 대손세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일반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지난 10년간 평균적으로 0.03%임

〈표 III-4〉 일반사업자 과세매출 대비 대손세액공제 비율

(단위: 건수, 백만원)

귀속연도	과세매출 <sup>1)</sup>		대손세액공제		대손세액공제 비율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2013	8,928,431	58,344,386	5,968	23,828	0.07%	0.04%
2014	9,202,393	59,295,219	5,114	21,626	0.06%	0.04%
2015	9,684,047	60,967,896	4,921	22,075	0.05%	0.04%
2016	10,200,034	63,278,284	4,230	17,767	0.04%	0.03%
2017	10,708,788	66,821,732	4,140	17,989	0.04%	0.03%
2018	11,181,579	68,828,706	4,090	16,143	0.04%	0.02%
2019	11,660,306	69,694,623	3,810	15,423	0.03%	0.02%
2020	12,081,937	68,949,467	3,630	14,529	0.03%	0.02%
2021	12,339,803	74,942,339	3,533	14,862	0.03%	0.02%
2022	12,678,609	81,836,889	2,735	10,708	0.02%	0.01%
평균	10,866,593	67,295,954	4,217	17,495	0.04%	0.03%

주: 1.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자료는 당초 신고일 이후 통계연보 작성일까지의 변동사항(추가, 정정, 삭제)을 반영한 수치임

1) 과세매출에는 세금계산서발급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예정신고 누락분 과세분을 포함함

자료: 국세통계포털, 국세통계 9-5-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현황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 2022년 기준으로 일반과세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세액은 과세매출세액 대비 0.01%로 현재 법인세법에 따른 대손실적률이 1%인 것을 감안하면 대손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표 Ⅲ-3>, <표 Ⅲ-4>의 대손세액공제 비율을 보면 지난 10년간 매년 0.05%를 넘지 않았음
- 한편, <표 Ⅲ-2>의 대손세액 합계액을 보면 최근 10년간 일반과세자가 신고한 대손세액공제의 누적 세액은 1조원에 육박하나 <표 Ⅲ-5>에서 공급받은 자가 대손처분 받은 세액으로 신고한 세액의 합계액은 45억원으로 0.5%가 채 되지 않음
  - 이는 세무행정<sup>59)</sup>상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때 공급받은 자가 해당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과세관청이 결정, 경정하거나 사후에 알게 되어 수정 신고 하기 때문으로 보임
  - 과세관청에서 결정, 경정한 경우에 실제로 회수된 매입세액 관련 통계는 확인되지 않으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공급받은 자의 사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사실상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표 Ⅲ-5>의 변제대손세액공제 세액 합계를 보면 공급받은 자가 채권을 변제하고 다시 변제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도 지난 10년간 20억원에 불과함

<표 Ⅲ-5> 대손세액공제 매입세액 차가감 신고 현황

(단위: 건수, 백만원)

귀속연도	대손처분받은 세액 <sup>1)</sup>				변제대손세액공제 <sup>2)</sup>			
	법인사업자		일반사업자		법인사업자		일반사업자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2013	23	154	23	12	77	269	51	50
2014	33	175	24	143	84	266	48	83
2015	8	1,878	1	1	122	262	33	-22
2016	9	296	-	-	103	159	47	72

5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3항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함

〈표 Ⅲ-5〉의 계속

(단위: 건수, 백만원)

귀속연도	대손처분받은 세액 <sup>1)</sup>				변제대손세액공제 <sup>2)</sup>			
	법인사업자		일반사업자		법인사업자		일반사업자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2017	1	7	-	-	93	89	57	44
2018	2	10	-	-	96	190	60	56
2019	10	1,721	-	-	82	-1	51	73
2020	2	56	-	-	63	-17	35	55
2021	1	0	-	-	65	96	29	83
2022	2	57	1	-	72	205	42	35
합계	91	4,354	49	156	857	1,518	453	529

주: 1.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자료는 당초 신고일 이후 통계연보 작성일까지의 변동사항(추가, 정정, 삭제)을 반영한 수치임

-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외상매입금 그 밖에 매입채무가 폐업 전에 대손이 확정되어 거래상대방이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관련 대손처분을 받은 세액
- 2)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외상매입금, 그 밖에 매입채무가 대손 확정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받은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

자료: 국세통계포털, 국세통계 9-5-2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신고 현황; 9-5-3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신고 현황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 IV. 주요국의 대손세액공제 제도

### 1. 유럽연합(European Union) 지침

#### 가. 대손세액공제 관련 지침

- EU는 회원국 간 부가가치세 등의 간접세 법규정의 조화를 위해 구속력을 가지는 부가가치세 지침을 제정하였음<sup>60)</sup>
  - EU는 1967년 회원국에 구속력을 가지는 부가가치세 지침(Directive)을 제정하였으며, 이후 몇 차례 수정을 거쳐 현재 2006년 11월 28일 자 제6차 부가가치세 지침을 주된 지침으로 하고 있음<sup>61)</sup>
  - 부가가치세 지침은 회원국의 국내법에 우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회원국은 EU 부가가치세 지침의 지향 목적에 부합하게 국내법을 제정해야 함
    - 회원국은 EU 부가가치세 지침의 목적에 부합하게끔 국내법에서의 적용 방식과 형식을 선택할 수 있음
  
- EU는 부가가치세 중립성 원칙의 실현을 위해서 대손세액공제 제도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음<sup>62)</sup>

---

60) 박종수(2002), p. 53.; p. 72.

61) 이후 본 보고서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지침 또는 지침이란 2006년 11월 28일 자 제6차 부가가치세 지침을 말함

62) Minister Finansów v Kraft Foods Polska SA, C-588/10(2012), 26, 27문단; [2008] UKVAT V20611(13 March 2008) 25-28문단; Van Doesum(2022), p. 12.; Van Doesum et al.(2020), pp. 40~43.; Van Abswoude(2022), pp. 6~10.

- EU 부가가치세 지침은 부가가치세 중립성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유럽 연합 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이하 “ECJ”)는 부가가치세 중립성을 EU 부가가치세 지침을 해석하는데 근본원칙으로 보고 있음
  - ECJ는 부가가치세 중립성 관점에서 과세당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가 수취한 대가에 비례하여 산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시함
    - 이를 위해서는 시스템적으로 공급체인 길이와 무관하게 동일한 과세부담이 이루어져야 하며, 부가가치세가 사업자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매입세액공제가 보장되어야 하고, 이중 또는 비과세를 방지하며, 부가가치세는 개인소비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모든 종류의 개인소비에 대한 과세가 필요함
  - 대손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부가가치세는 실제 생산되어 공급된 재화 및 용역의 실제 받은 가격에 비례하며, 과세당국은 공급자가 받은 세금을 초과하는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할 수 없다는 원칙을 구현하고 부가가치세의 중립성이 보호될 수 있음
- 이에 따라 EU 부가가치세 지침 제90조에서는 대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원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sup>63)</sup>
- EU 부가가치세 지침 제3편. 과세표준금액(Title III. TAXABLE AMOUNT)의 제5장 기타 조항들(Miscellaneous provisions)의 일부로 대손세액공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제90조 제1항에서는 공급 이후 취소, 거절, 전부 또는 일부분 미지급(즉, 대손), 가격의 감액이 발생한 경우 회원국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과세표준을 감액하도록 규정함

63) EU 부가가치세 지침 제90조의 원문은 아래와 같음

1. In the case of cancellation, refusal or total or partial non-payment, or where the price is reduced after the supply takes place, the taxable amount shall be reduced accordingly under conditions which shall be determined by the Member States
2. In the case of total or partial non-payment, Member States may derogate from paragraph 1.

- 동조 제2항에서는 ‘전부 또는 부분 미지급’의 경우 회원국은 제1항을 무시할 수 있다고도 규정함
- 한편, 대손세액공제의 근거 조항인 EU 부가가치세 지침 제90조의 표현상 모호함으로 인하여 회원국이 대손세액공제를 반드시 도입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음
  - EU 제6차 부가가치세 지침 초안에 대한 설명에 의하면, 미지급액은 과세표준에서 감액되어야 하며 납용 방지를 위하여 회원국이 적용을 위한 조건을 둘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함<sup>64)</sup>
  - 그러나 EU 부가가치세 지침 제90조 제2항은 회원국이 지침 제90조 제1항을 무시(derogate)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대손세액공제 규정의 도입 여부 자체가 회원국의 재량에 달린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음
- 이에 대해 ECJ는 확정적 미지급의 경우는 반드시 과세표준에서 감액 조정되어야 하는 것이며, 해당 채권이 부실채권임을 입증하기 위한 목적에 국한하여 제약조건을 둘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
  - ECJ는 지침 제90조 제1항의 적용대상은 모든 미납(확정적 및 미확정적)을 의미하며, 제90조 제2항은 미확정적 미납에 국한되는 것으로 해석함<sup>65)</sup>
    - ECJ는 부가가치세의 중립성 원칙에 따라 확정적 미납액은 과세표준에서 감액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함
    - 채무자가 도산절차(insolvency proceeding)에 들어갔다면 확정적 미지급으로 보아야 하며, 회원국은 확정적 미지급의 경우에는 반드시 과세표준에서 감액을 허용해야 함

64) Terra, Kajus and Szatmari(2023), 7.6.1.문단

65) Van Doesum(2022), p. 14.; VATUPDATE, “ECJ Case C-292/19 (PORR Epitesi Kft.) – Judgment (Order) – Adjustment of output VAT due to non-payment,” <https://www.vatupdate.com/2019/11/05/ecj-questions-c-292-19-porr-epitesi-kft-vs-hu-adjustment-of-output-vat-due-to-non-payment/>, 검색일자: 2023. 12. 20.

- 회원국은 지침 제90조 제1항과 관련하여 공급자에게 해당 부실채권이 확정적 미납액임을 입증하게끔 하는 목적에 한정하여 제약조건을 둘 수 있음<sup>66)</sup>
    - 지침 제273조는 부가가치세의 올바른 징수와 탈세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타 의무를 지을 수 있는 회원국의 재량권을 허용하고 있는바, 지침 제90조 제1항을 적용하는데 제약조건을 둘 수 있음
  - 확정적 미지급이란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 확실하거나 합리적으로 볼 때 가능성 높은 상황(certain or reasonably likely)으로 이해됨<sup>67)</sup>
- ECJ는 부실채권임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및 일시적 미지급 채권인 경우를 감안하여 지침 제90조 제2항에서 미확정적 미지급의 경우에는 회원국에 대손세액공제 운영의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판단함<sup>68)</sup>
- Di Maura 사건에서 특별법무관 Kokott는 지침 제9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사례(예: 공급 이후 취소, 거절)에 비하여 미지급은 불확실성(uncertain)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침 제90조 제2항은 지침 제90조 제1항을 적용하는데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재량일 뿐 대손세액공제 자체의 재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힘<sup>69)</sup>
  - 지침 제90조 제2항은 확정적 미지급 채권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대손세액공제의 시기를 확정시기로 이연하기 위한 용도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음<sup>70)</sup>

66) Van Doesum(2022), p. 14.; SCT, d.d v Republic of Slovenia, C-146/19 (2020), 37문단; Almos Agrárkülkereskedelmi Kft v Nemzeti Adó- és Vámhivatal Közép-magyarországi Regionális Adó Főigazgatósága, C-337/13 (2014), 29-40문단

67) Van Doesum(2022), p. 14.

68) SCT, d.d v Republic of Slovenia, C-146/19 (2020), 23문단; 'UniCredit Leasing' EAD v Direktor na Direktsia 'Obzhalvane i danachno-osiguritelna praktika' - Sofia pri Tsentralno upravlenie na Natsionalnata agentsia za prihodite (NAP), C-242/18 (2019), 54문단

69) OPINION OF ADVOCATE GENERAL KOKOTT delivered on 8 June 2017 Case C-246/16 - Enzo Di Maura, 32-39문단

70) Van Doesum(2022), p. 23.

- 한편, 공급받는 자 측면의 조세 문제를 살펴보면 회원국은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지급된 경우 이미 공제된 부가가치세액을 조정할 수 있음
  - 지침 제184조 및 제185조에 의해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 매입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한 경우, 회원국은 최초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하였던 매입세액을 조정할 수 있음
    - 공급자의 대손세액공제를 규정하는 지침 제90조에 대한 대응조정으로 지침 제185조에서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반환을 규정하고 있음<sup>71)</sup>
  - ECJ는 재정중립성 측면에서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공제액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았으며<sup>72)</sup>, 그 외 부가가치세 체제 전체의 대칭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음<sup>73)</sup>
    - 현재 부가가치세 지침은 매입세액 반환규정 도입 여부가 회원국의 선택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이는 부가가치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국가가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분류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감안하여 강행규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sup>74)</sup>

#### 나. EU 회원국의 대손세액공제 도입 현황

- 2023년 12월 말 기준 27개 EU 회원국 중 26개의 회원국이 대손세액공제 제도를 운영 중임
  - EU 회원국 중 그리스만이 대손세액공제 제도를 미운영 중임
    - 2019년 그리스 대법원은 일명 “pilot” 판결을 통해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EU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결하였으나, 해당 판결 이후에도 대손세액공제 규정이 도입되지는 않았음<sup>75)</sup>

71) Heijnen(2018), p. 451.

72) Van Doesum(2022), p. 36.; E. Sp. z o.o. Sp. k. v Minister Finansów, C-335/19 (2020), 37-38문단.

73) Van Doesum(2022), p. 32.; Heijnen(2018), p. 451.

74) Heijnen(2018), pp. 451~452.

- 헝가리는 2020년에,<sup>76)</sup> 슬로바키아는 2021년에,<sup>77)</sup> 에스토니아는 2022년에,<sup>78)</sup> 불가리아는 2023년에<sup>79)</sup> 대손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함
    - 헝가리는 2020년에 B2B거래를 대상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도입하였으며, 이후 2021년에 B2C거래에까지 제도를 확대함<sup>80)</sup>
  - 이론적으로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중립성을 위해 보장되어야 하지만, 대손세액공제를 무조건 허용하는 회원국은 없음<sup>81)</sup>
- 대손세액공제를 운영하고 있는 EU 회원국의 대손세액공제 요건 및 운영방식은 매우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움<sup>82)</sup>
- 대손세액공제 신청 가능 기한을 두어 해당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회원국이 관찰됨
    - 키프로스, 체코, 에스토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은 지급약정일로부터 3~5년의 대손세액공제 신청 가능 기한을 두고 있음
  - 일부 회원국은 특수관계인 간의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원천적으로 금지함

75) EY, [https://www.ey.com/en\\_gr/tax/tax-alerts/ey-vat-on-bad-debts](https://www.ey.com/en_gr/tax/tax-alerts/ey-vat-on-bad-debts), 검색일자: 2024. 2. 13.; IBFD - Greece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6. Taxable Amount - 6.1. Domestic supplies of goods and services - 6.1.5. Adjustment of taxable amount (Last Reviewed: 15 September 2023)

76) IBFD - Hungary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6. Taxable Amount - 6.1. Domestic supplies of goods and services - 6.1.5. Adjustment of taxable amount (Last Reviewed: 15 August 2023)

77) IBFD - Slovak Republic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6. Taxable Amount - 6.1. Domestic supplies of goods and services - 6.1.5. Adjustment of taxable amount (Last Reviewed: 15 September 2023)

78) Grant Thornton Baltic OÜ, <https://www.grantthornton.ee/en/insights1/vat-reduction-possible-on-bad-depts-from-2022/>, 검색일자: 2024. 2. 13.

79) IBFD, [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ivm/html/ivm\\_2023\\_02\\_bg\\_1.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ivm/html/ivm_2023_02_bg_1.html), 검색일자: 2024. 2. 13.

80) EY(2023), p. 810.

81) Van Doesum(2022), p. 11.

82) Van Doesum and Sanderson(2023), pp. 27~28.; Annacondia(2023), 5.2. Bad-debt relief

- 불가리아, 아일랜드,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포르투갈, 루마니아는 특수관계인 간의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음
  - 불가리아는 대손금액이 BGN 100,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사전 통보 후 과세당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라트비아는 공급이 이루어진 시점에 고객에 대한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우선 미회수 채권의 50%를 공제받고, 파산선고 후 나머지 50%를 공제하는 분할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함
- 회원국의 대손세액공제 사유를 살펴보면, 법원의 회수불능 판결을 요구하는 등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회원국도 있으나 특정기간의 경과만으로 단순화하거나 회계 기준을 준용하는 회원국도 있음
-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페인, 이탈리아, 에스토니아 등은 대손세액공제를 위해서는 채무자의 파산, 채무불이행의 법적 확정 등 사법부의 판결을 요구함
  - 그러나 폴란드와 네덜란드는 지급약정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대손세액 공제를 허용함
    - 폴란드는 당초 대손세액공제를 위한 다양한 제약조건이 있었으나 2021년부터 요건을 단순화함<sup>83)</sup>
  - 핀란드는 대손세액공제 사유로 회계기준을 준용함
- 프랑스, 독일 등은 대손세액공제 사유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불가리아, 체코 등은 대손세액공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은 채권의 회수 불가능을 납세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가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83) IBFD - Poland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6. Taxable Amount - 6.1. Domestic supplies of goods and services - 6.1.5. Adjustment of taxable amount (Last Reviewed: 15 November 2023); VGD, <https://pl.vgd.eu/en/newsroom/bad-debt-relief/>, 검색일자: 2024. 1. 29.; Doradztwo Podatkowe WTS&SAJA, <https://wtssaja.pl/en/who-can-use-bad-debt-relief/>, 검색일자: 2024. 1. 29.

- 그러나 불가리아, 체코, 스페인, 헝가리 등은 대손세액공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 채권 발생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때에만 대손세액공제 사유를 감안한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하는 회원국도 있음
  - 키프로스, 헝가리, 스페인은 지급약정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채권만 대손세액공제 사유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대손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음
- 일부 회원국은 소액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동시에 초소액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경우도 있음
  -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스웨덴, 슬로바키아는 소액채권에 대해서는 그 외의 채권에 비하여 대손세액공제 적용요건을 완화함
    - 대손세액공제 신청 가능 시기, 법적 절차가 아닌 상업적 절차만으로도 회수를 위한 노력을 인정하는 방식 등으로 소액채권에 대해서 대손세액공제를 완화하여 적용함
  - 스페인은 50유로 이하의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배제함
    - 2023년 이전에는 300유로였으나 기준금액을 완화함<sup>84)</sup>
- 법인 규모에 따라 대손세액공제 적용요건을 차등하는 국가로는 스페인이 있음
  - 스페인은 원칙적으로 지급약정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나, 소규모법인의 경우에는 6개월로 공제신청 가능 미회수기간을 단축하여 적용함
- 크로아티아는 별도의 대손세액공제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공급자가 아닌 공급받는 자의 결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됨<sup>85)</sup>

84) Baker McKenzie, <https://insightplus.bakermckenzie.com/bm/tax/multijurisdictional-vat-corrections-in-case-of-bad-debts-considering-eu-case-law>, 검색일자: 2024. 1. 29.

- 크로아티아는 공급받은 자가 매입세액을 조정하였음을 통보하는 경우에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음

〈표 IV-1〉 EU 회원국의 대손세액공제 사유

No	국가	도입여부	대손세액공제 사유
1	오스트리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li> <li>•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법적으로 확정되었거나 채권자가 채무 면제를 승인한 경우</li> </ul>
2	벨기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법적으로 확정된 경우</li> </ul>
3	불가리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원판결에 의해 채권이 취소된 경우</li> <li>• 채권이 법률에 의해 조정된 경우</li> <li>• 도산절차의 일환으로 채권이 감액된 경우</li> <li>• 도산 또는 청산절차 이후 채무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li> <li>• 강제집행절차 이후에도 회수 불가능한 경우</li> <li>• 600불가리아레브<sup>86)</sup>를 초과하는 채권으로써 지급약정일로부터 365일이 경과한 경우</li> <li>• 소멸시효(3년, 5년)가 완성된 경우</li> </ul>
4	키프로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권회수를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였으나 최소한 12개월이 경과하도록 부채가 상환되지 않아 공급자의 장부에 악성 부채로 기록되는 경우</li> </ul>
5	체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법령에 의해 강제집행 개시되었으나 최초 집행명령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li> <li>• 관련 법령에 의해 강제집행 개시되었으나 채무자의 자산 부족으로 집행이 종료된 경우</li> <li>• 채무자가 도산과정 중에 있는 경우</li> <li>• 채무자가 사망하였으며 완료된 상속절차 결과 미회수가 확실한 경우</li> </ul>
6	독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권이 회수 불가능함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예: 도산절차 개시, 파산 등)</li> </ul>

85) IBFD - Croatia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6. Taxable Amount - 6.1. Domestic supplies of goods and services - 6.1.5. Adjustment of taxable amount (Last R reviewed: 15 September 2023)

86) 우리나라 원화로 444,777원 상당액임(2024. 1. 29. 환율 기준)

〈표 IV-1〉의 계속

No	국가	도입여부	대손세액공제 사유
7	덴마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li> <li>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법적으로 확정된 경우</li> <li>채권자가 채권이 회수되지 못함을 입증하기 위해 채무를 추심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한 경우</li> </ul>
8	에스토니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액채권(30,000유로 이하): 지급약정일로부터 최소 12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로서 회수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였으나 회수하지 못하였거나 회수비용이 예상회수액을 초과하여 장부에서 제각한 경우</li> <li>그 외: 회수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였으나 회수하지 못하였거나 회수비용이 예상회수액을 초과하여 장부에서 제각한 경우로서 법원의 합의증서(court settlement)를 구비한 경우</li> </ul>
9	그리스	x	N/A
10	스페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급약정일로부터 최소 12개월(연 매출 699만유로 미만인 소기업은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으로 공급자가 채권회수를 위해 법원, 공증인 또는 기타 방법으로 지급청구서를 제출했거나 채무자가 채권자회의의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li> </ul>
11	핀란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계기준상 대손요건을 충족한 경우(예: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실패한 경우, 공급자가 파산한 경우 등)</li> </ul>
12	프랑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채무자의 확정적 지급불능이 입증되는 경우</li> </ul>
13	크로아티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채무자가 매입세액공제액을 감액 조정하였음을 공급자에게 통보하는 경우</li> </ul>
14	헝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급약정일로부터 최소 12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으로써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임이 확인되거나, 파산 또는 청산과정에서 채권자가 해당 채권을 취소한 경우, 청산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으며 청산인이 발부한 서면명령에도 불구하고 회수 가능한 대금이 없는 경우, 청산절차 종료에도 불구하고 회수 불가능한 경우, 개인의 경우 법원의 부채 합의 절차에 의해 잔여채무가 면제되는 경우</li> </ul> </li> </ul>
15	아일랜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능한 회수 노력을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수하지 못해 장부에서 제각한 경우</li> </ul>
16	이탈리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시작하였거나 강제집행 절차가 실패한 경우</li> </ul>

〈표 IV-1〉의 계속

No	국가	도입여부	대손세액공제 사유
17	룩셈부르크	○	• 채권이 회수 불가능함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18	리투아니아	○	• 지급약정일로부터 최소 12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으로써 회수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실패하였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경우
19	라트비아	○	• 소액채권(430유로 이하): 직전 3년 이내에 발생한 채권으로써 대손세액공제 청구 전 6개월 이상 사업관계를 종료하였고 회수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회수하지 못하고 소득세법상 제각한 경우 • 그 외: 소액채권의 대손요건에 추가하여 회수 불가능하다는 법원의 결정과 집행관의 진술서가 있는 경우
20	몰타	○	• 채권이 회수 불가능할 것임을 과세당국이 납득할 수 있고 회수 가능성에 대한 법원의 최종판결을 제시하는 경우
21	네덜란드	○	•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리라는 것이 명확한 경우(예: 채무자의 파산) • 지급약정일로부터 1년을 경과한 경우
22	폴란드	○	• 지급약정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된 경우
23	포르투갈	○	• 채무자가 도산과정을 선언받았거나 특정 회생절차 중인 경우, 채무자의 자산 부족으로 집행절차가 계류 중인 경우 등 • 그 외, 회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12개월 이상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단, 공급가액이 150,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사전 허락을 요함) • 매입세액공제권이 없는 자에게 공급한 경우로서 공급대가가 75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채권인 경우에는 지급약정일로부터 6개월을 경과한 경우
24	루마니아	○	• 원칙: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개시가 법원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 법원의 허가에 의한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조정되는 경우 • 예외: 2021년부터 지급약정일로부터 12개월간 미지급된 비특수관계자 채권의 경우 1,000루마니아레우 <sup>87)</sup> 이하의 채권은 채권회수를 위한 상업적 노력이 입증되는 경우, 1,000루마니아레우 초과 채권은 채권회수를 위한 사법적 절차를 착수하는 경우
25	스웨덴	○	• 원칙: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도산절차 진행 중인 경우 • 소액채권(1,000크로나 <sup>88)</sup> 미만): 지급청구 및 추심청구서가 모두 발생하였으나 지급약정일로부터 최소 8개월을 경과한 경우

〈표 IV-1〉의 계속

No	국가	도입여부	대손세액공제 사유
26	슬로베니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채무자의 도산과정에서 채권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법원의 후속 결정에 의해 미지급되는 경우</li> </ul>
27	슬로바키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액채권(1,000유로 미만): 지급약정일로부터 150일이 지났으며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중재재판소가 아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채권회수 강제절차 중인 경우</li> <li>채무자가 파산절차 중으로써 재산부족으로 파산절차가 중지 중이거나 취소되었거나 파산 종결된 경우</li> <li>채무자가 채무면제 절차를 밟고 있으며 파산재단이 파산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사실로 파산이 종료되었거나 파산이 선언된 경우</li> <li>법인채무자가 법적 승계인 없이 소멸한 경우</li> <li>개인채무자가 잔여재산 없이 사망한 경우</li> <li>구조조정 종료 결의문이 발표되었으나 당해 채권은 포함되지 않은 경우</li> </ul>

자료: Annacondia(2023), 5.2. Bad-debt relief.

- EU 지침에 의하여 회원국은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하는 규정을 둘 수 있으나, 모든 회원국이 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sup>87)</sup>
  - 오스트리아, 벨기에, 크로아티아 등 대부분의 회원국은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로부터 기공제세액을 반환받고 있음
  - 반면, 몰타, 핀란드는 공급받는 자에 대한 대응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일부 회원국은 공급받는 자가 일정기간 내에 대금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공급자의 대손세액공제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

87) 우리나라 원화로 291,358원 상당액임(2024. 1. 29. 환율 기준)

88) 우리나라 원화로 127,890원 상당액임(2024. 1. 29. 환율 기준)

89) KPMG,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xx/pdf/2020/04/indirect-tax-treatment-of-bad-debts-a-multijurisdictional-analysis.pdf>, 검색일자: 2024. 1. 4.

- 슬로바키아는 2023년부터 공급일로부터 100일이 경과한 후에는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정정하도록 함<sup>90)</sup>
- 폴란드는 공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대가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정정하도록 함<sup>91)</sup>

## 다. 주요 유럽사법재판소 판례

### 1) Di Maura 판례: 도산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만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한 사안에 대한 판례<sup>92)</sup>

#### □ (사실관계 및 사건개요)<sup>93)</sup>

- 2004년 Di Maura씨는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고 송장을 발행했지만 공급받는 자가 2004년 11월 30일 판결에 의해 지급불능으로 선언되면서 대가를 받지 못함
- Di Maura씨는 2004년 12월 31일 쟁점 금액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이탈리아 과세당국이 도산절차의 미종료를 사유로 거부함에 따라 지방조세법원에 소를 제기함
  - 이탈리아 세법은 도산절차가 실패하였음(예: 잔여재산 분배 완료하였으나 미배당)을 입증하는 때에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함

90) Annacondia(2023), 5.2. Bad-debt relief. 각주 6

91) KPMG,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xx/pdf/2020/04/indirect-tax-treatment-of-bad-debts-a-multijurisdictional-analysis.pdf>, 검색일자: 2024. 1. 4.; VGD, <https://pl.vgd.eu/en/newsroom/bad-debt-relief/>, 검색일자: 2024. 1. 29. ; Drozdowski and Lachowicz (2023), pp. 338~339.

92) 이탈리아는 본 판례를 바탕으로 2021년 5월 26일 이후 시작된 도산/파산절차에 대해서는 최종판결 이전 도산절차의 개시시점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함(IBFD - Italy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6. Taxable Amount - 6.1. Domestic supplies of goods and services - 6.1.5. Adjustment of taxable amount(Last Reviewed: 15 September 2023))

93) Enzo Di Maura v Agenzia delle Entrate — Direzione Provinciale di Siracusa, C-246/16 (2017), 6-9문단

- 이에 따라 파산절차가 종료되는 때에 대손세액공제가 허용되며 파산절차 개시 후 종결까지는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음

- 이탈리아 지방조세법원은 이탈리아 대손세액공제 규정이 EU 법률의 비례성, 효율성 및 부가가치세 중립성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ECJ에 질의함

#### □ (ECJ의 판결)

- 대손은 불확실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회원국은 재정조화원칙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손세액공제에 대한 제약조건을 둘 수 있음<sup>94)</sup>
-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채권이 회수되지 않음이 확정적일 때에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할 수도 있으나, 추후 채권이 회수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미회수 가능성에 대해 합리적 설명이 가능하다면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국가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하고 자금을 미리 조달해야 하는 납세자에게 덜 부담스러우면서 효과적인 수단일 것임<sup>95)</sup>
- 도산절차가 10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도산절차가 실패(즉,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회수)한 경우에만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것은 타 회원국의 사업자에 비해 현금흐름상 불이익이고 재정조화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으로 판시함<sup>96)</sup>

94) Enzo Di Maura v Agenzia delle Entrate — Direzione Provinciale di Siracusa, C-246/16 (2017), 17-18문단

95) Enzo Di Maura v Agenzia delle Entrate — Direzione Provinciale di Siracusa, C-246/16 (2017), 28문단

96) Enzo Di Maura v Agenzia delle Entrate — Direzione Provinciale di Siracusa, C-246/16 (2017), 29문단

2) A-PACT CZ 판례<sup>97)</sup>: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지위 지속을 요건으로 둔 사안에 대한 판례

□ (사실관계 및 사건개요)<sup>98)</sup>

- 체코법인인 A-PACK CZ는 고객이 2009년 5월 27일 파산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2011년 4분기 신고 시 고객에게 2008년 10월 30일부터 2009년 2월 2일까지 공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함
- 체코 과세당국은 고객이 부가가치세법상 폐업한 점을 근거로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음
  - 체코 세법은 채무자가 도산과정에 들어가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하나 채무자가 더 이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음
  - 고객은 2011년 11월 3일부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 A-PACK CZ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체코 최고행정법원은 대손세액공제 요건으로 고객의 사업자 지위 지속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ECJ에 질의함

□ (ECJ의 판결)<sup>99)</sup>

- 본안에서 대손세액공제를 위해 채무자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지위 지속을 요구하는 것은 대손세액공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조치로 이해되지 않음
  - 오히려 공급받는 자가 도산과정 중에 사업을 폐업하였다면 미지급의 확정적 성격을 나타내는 증표일 수 있음
- 대손세액공제에 대한 제약조건이 부가가치세의 탈세와 세수손실 위험을 제거하여 세액을 올바르게 징수하기 위한 조치인 경우에는 정당화될 수도 있으나, 이 역시 대손세액공제의 불확실성과 연계된 조치인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음

97) 체코는 본 판례를 바탕으로 2019년에 대손세액공제 관련 규정을 변경함

98) A-PACK CZ s. r. o. v Odvolací finanční ředitelství, C-127/18 (2019), 6-15문단

99) A-PACK CZ s. r. o. v Odvolací finanční ředitelství, C-127/18 (2019), 23-28문단

- 채무자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지위의 지속을 대손세액공제 요건으로 하는 것은 조세회피 및 탈세에 대한 대응으로 보이지 않으며, 채권자가 경제활동 과정에서 수취하지 못한 부가가치세 금액을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지침 제273조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시함

3) E. Sp. z o.o. Sp. k. 판례: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지위의 지속 및 공급받는 자가 도산 및 해산절차 중에 있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한 사안에 대한 판례

□ (사실관계 및 사건개요)<sup>100)</sup>

- E.는 세무자문업을 영위하는 폴란드 법인으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고객은 지급약정일로부터 150일이 경과하기 전에 대금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해산절차에 들어갔음
- E.는 신청시점에 채무자가 해산과정에 있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조건 이외의 모든 대손세액공제 적용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폴란드 재무부에 유권해석을 신청했으나 부정적 답변을 받음
  - 폴란드 세법에 의하면 지급약정일로부터 150일 이내 결제되지 않은 채권은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되, 아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음
    - \* 공급시점에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며 도산 또는 해산과정에 있지 않을 것
    - \* 대손세액공제 신청 전날에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며, 공급받는 자가 도산 또는 해산과정 중에 있지 않을 것
    - \*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을 것
- 이에 E.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폴란드 대법원은 재정중립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폴란드의 대손세액공제 요건이 EU 부가가치세 지침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ECJ에 질의함

100) E. sp. z o.o. sp. k. v Minister Finansów, C-335/19(2020), 9-19문단

□ (ECJ의 판결-사업자 지위 지속 관련)

- 대손세액공제에 대한 제한은 미납이 확정적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 정당화될 수 있음<sup>101)</sup>
- 공급일에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채권회수의 불확실성과 무관하므로 정당화될 수 없음<sup>102)</sup>
  -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최종소비자라 하더라도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여야 하며 대손세액공제 권한 또한 부여되어야 할 것임
- 대손세액공제 신청 전일에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A-PACT CZ 판례에서 기검토된 바와 같이 정당화될 수 없음<sup>103)</sup>
- 대손세액공제 신청 전일에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미지급의 불확실성과 무관한 요소이므로 정당화될 수 없음<sup>104)</sup>
  - 채무의 존재와 채무자의 납부의무는 채권자(즉, 공급자)가 계속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와 무관함
  - 또한, 채권자가 더 이상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과거 공급한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함
- 대손세액공제 요건으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지위를 요구하는 것은 조세 회피 및 남용의 관점에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음<sup>105)</sup>

□ (ECJ의 판결-공급받는 자가 대손세액공제 신청시점 도산과정이 아닐 것 관련)<sup>106)</sup>

- 도산 및 해산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미지급이 확정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공급 및 대손세액공제 신청시점에 도산 또는 해산과정이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둘 수는 있음

101) E. sp. z o.o. sp. k. v Minister Finansów, C-335/19(2020), 32문단

102) E. sp. z o.o. sp. k. v Minister Finansów, C-335/19(2020), 33문단

103) E. sp. z o.o. sp. k. v Minister Finansów, C-335/19(2020), 34문단

104) E. sp. z o.o. sp. k. v Minister Finansów, C-335/19(2020), 35문단; 40문단

105) E. sp. z o.o. sp. k. v Minister Finansów, C-335/19(2020), 45문단

106) E. sp. z o.o. sp. k. v Minister Finansów, C-335/19(2020), 46-50문단

- 그러나 Di Maura 판례에서 본 바와 같이 도산과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납세자가 회수 불가능의 합리적 가능성을 입증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인 수단일 것이며 비례의 원칙에 부합함
- (ECJ의 최종판결)
  - ECJ는 폴란드의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지위 지속요건, 공급받는 자의 도산 또는 해산과정에 있지 않을 요건은 EU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함<sup>107)</sup>

## 2. 영국

### 가. 부가가치세제 개요

- 영국은 1973년에 소비형 부가가치세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공급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세금계산서에 기반한 전단계세액공제방식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제를 운영하고 있음
- 영국은 원칙적으로 발생주의회계를 채택하고 있으나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현금주의회계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영국 부가가치세법(VAT Act 1994) 제6조는 공급시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납세자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sup>108)</sup>
  - 다만, 익년도 과세공급가액이 1,350,000파운드 이하일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로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현금주의회계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sup>109)</sup>

107) E. sp. z o.o. sp. k. v Minister Finansów, C-335/19(2020), 53문단

108) HMRC, VAT Guide(Notice 700, Last updated 29 September 2023) 16.2 General information about VAT invoices.

-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분기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
  - 납세자는 과세기간(분기)별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sup>110)</sup>
  - 다만, 익년도 과세공급가액이 1,350,000파운드 이하일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을 1년으로 선택할 수 있음<sup>111)</sup>

## 나. 대손세액공제 제도

- 영국은 1978년 10월에 대손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1989년 4월부터 적용 조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sup>112)</sup>
  - 1978년 도입 당시에는 공급받는 자가 도산(insolvent)하는 경우에만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었음<sup>113)</sup>
    - 공식적인 도산절차(formal insolvency process)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할 때 소액채권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음<sup>114)</sup>
  - 1989년 4월부터는 기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약정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여도 미회수한 채권에 대해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됨
  - 1997년 3월 19일 이전에는 재화의 소유권이 고객에게 반드시 이전되어야 하는 조건도 있었음<sup>115)</sup>

109) HMRC, Cash Accounting Scheme(VAT Notice 731, Last updated 18 December 2023).  
2. Basics of cash accounting

110) HMRC, VAT Guide(Notice 700, Last updated 29 September 2023) 20.3 Tax periods

111) HMRC, VAT Annual Accounting Scheme (<https://www.gov.uk/vat-annual-accounting-scheme>, 검색일자: 2024. 1. 24.)

112) 영국정부,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vat-bad-debt-relief/vbdr1200>, 검색일자: 2023. 12. 26.

113) Value Added Tax Act 1983 s.22

114) [2023] UKUT122(TCC), 2023. 5. 30., 17문단

115) 영국정부,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revenue-and-customs-brief-1-2017-vat-historical-bad-debt-relief-claims/revenue-and-customs-brief-1-2017-vat-historical-bad-debt-relief-claims>, 검색일자: 2024. 1. 2.

- 영국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와 부가가치세 규정(VAT Regulations 1995) 제165조 내지 제172조에서 대손세액공제 제도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법의 Part II Reliefs, exemptions and repayments 부분에서 대손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함
  
- 과세사업자가 공급일 등으로부터 최소 6개월이 경과된 채권(전부 또는 일부)을 부가가치세 목적상 장부에서 대손으로 제각한 경우 과세관청에 기납부 매출세액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음<sup>116)</sup>
  - 최초신고 시 관련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한 과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함
    - 조세심판례에서는 만일 대손세액공제 대상 채권의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대해서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지 못했지만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매입세액 상당액까지는 매출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함<sup>117)</sup>
  -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상업장부(commercial accounting)에서 반드시 채권을 제각할 필요는 없으나 별도의 계정으로 이관하여 관리하여야 함<sup>118)</sup>
    - 추후 과세당국이 관련 내용을 쉽게 추적하고 세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은 단일 계정에 의해 관리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만일 회계장부 및 시스템상 대손액이 개별 채권과 정확하게 대응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가 부인될 수 있음<sup>119)</sup>
  - 공급일 또는 지급약정일 중 늦은 날로부터 최소한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만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sup>120)</sup>

116) Value Added Tax Act 1994, s.36.; Pearce and Taylor(2017), p. 461.

117) [2008] UKVAT V20611(2008. 3. 13.)

118) Pearce and Taylor(2017), p. 461.

119) [2022] EWCA Civ 103(2022. 2. 3.)

120) HMRC, Relief from VAT on bad debts (VAT Notice 700/18, Last updated 19 June 2020)  
2. Claiming bad debt relief. ; The Value Added Tax Regulations 1995, s.172

- 공급일 등으로부터 6개월 경과 여부를 판단하는데 공급자가 동일 공급받는 자에게 2회 이상 공급한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대가는 먼저 공급한 부분에 우선하여 지급된 것으로 봄<sup>121)</sup>

- 즉, 부가가치세법은 공급일 등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채권에 대해 납세자가 대손으로 분류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고 있음
  - 채권의 공급일 등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음<sup>122)</sup>
- 법인세법에서는 손상(impairment loss) 또는 면제(release)로 발생한 손실을 대손으로 보되 손금 인정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임<sup>123)</sup>
  - 영국 법인세법은 별도의 규정 없이 부채관계규칙(loop relationship rule) 및 자산재평가(revaluation) 일반규정에 의해 대손금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음
  - 손상에는 회수 불가능(uncollectability)이 포함되지만,<sup>124)</sup> 손상과 회수 불가능에 대해 정의 규정 또는 구체적 예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음
    - 영국 국세청의 내부 지침에 의하면 손상은 회계에서 유래된 개념으로 회계기준이 제대로 적용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으로도 인정됨<sup>125)</sup>
  - 전적으로 사업 목적상 구속력 있는 채무면제에 따른 대손은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채권자가 단순히 고의 또는 과실로 채무추심을 게을리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sup>126)</sup>

121) The Value Added Tax Regulations 1995, s.170. ; HMRC, Relief from VAT on bad debts (VAT Notice 700/18, Last updated 19 June 2020) 3.2 How to attribute payments.

122) 영국정부,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vat-bad-debt-relief/vbdr1700>, 검색일자: 2024. 1. 3.; Pearce and Taylor(2017), p. 492.

123) Corporation Tax Act 2009 s.324.; 영국정부,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business-income-manual/bim42701>, 검색일자: 2024. 1. 3.

124) Corporation Tax Act 2009 s.476.; s.479.

125) 영국정부,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orporate-finance-manual/cfm33220>, 검색일자: 2024. 1. 4.

126) 영국정부,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orporate-finance-manual/cfm41060>, 검색일자: 2024. 1. 4.

- 소멸시효 경과 또는 다른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법적으로 청구권이 없는 경우도 채무면제에 포함됨
-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인 간의 채무면제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음<sup>127)</sup>

- 공급대가가 시가보다 높은 경우, 채권을 양도한 경우 등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음<sup>128)</sup>
  - 거래상대방과 무관하게 공급대가가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음
  - 채권을 양도하거나 유효한 법률계약에 의해 팩터링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음
    - 공급자가 팩터링 기관에 채권을 양도(assign)한 경우 공급자는 대손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없으나, 해당 채권을 재양도(reassign)받은 경우에는 팩터링 기관으로부터 받은 대가와 무관하게 공급받는 자의 전체 미지급금액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음
  - 발생주의가 아닌 현금주의회계(cash accounting scheme)를 적용하거나 소매업자 특례(retail schemes)를 사용하는 납세자는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음
  -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 대한 채무가 있는 경우 및 집행 가능한 담보가 있는 경우, 보증인 등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부분에만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음<sup>129)</sup>

127) 영국정부,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orporate-finance-manual/cfm41070>, 검색일자: 2024. 1. 4. ; Corporation Tax Act 2009 s.354

128) Value Added Tax Act 1994, s.36(4). ; 영국정부,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vat-bad-debt-relief/vbdr1900>, 검색일자: 2024. 1. 3.; HMRC, Relief from VAT on bad debts (VAT Notice 700/18, Last updated 19 June 2020) 3.12. What happens if you assign or factor the debt

129) HMRC, Relief from VAT on bad debts (VAT Notice 700/18, Last updated 19 June 2020) 3.7 If you also owe the debtor money; 3.8 If you hold a security against the debt; 3.9 If you have insured against bad debts; 3.10 If you receive payment from a guarantor or other person

- 그러나 공급자가 대손을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사로부터 대손과 관련된 보험금을 수령한다 하더라도 이는 대손세액공제 신청가능액에 영향을 끼치지 않음

- 폐업한 사업자,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단일과세제도(flat rate scheme) 이용자 및 포괄적 사업양수인도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음
  - 대손세액공제 청구권 발생일에 공급자가 더 이상 과세표준의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함<sup>130)</sup>
    - 영국은 폐업 전에 공급받은 건과 관련된 매입세액, 폐업 후에 확인된 대손세액 공제 등에 대해 폐업한 사업자의 공제를 허용하고 있음<sup>131)</sup>
  - 단일과세제도(Flat Rate Scheme)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에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계산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음
    - 단일과세제도란 연간 매출액이 150,000파운드 이하인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별도로 계산할 필요 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함<sup>132)</sup>
    - 단일세율은 매입세액공제를 감안하여 결정되었으므로 발생주의회계방식으로 단일과세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자에게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으면 매입세액만큼의 손해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함<sup>133), 134)</sup>

130) The Value Added Tax Regulations 1995, s.166(2)

131) 영국정부,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vat-reclaim-or-claim-vat-relief-on-cancelling-vat-registration-vat427>, 검색일자: 2024. 1. 3.

132) HMRC, Flat Rate Scheme for small businesses (VAT Notice 733, Last updated 29 March 2023), 2. Basics of the Flat Rate Scheme.

133) HMRC, Flat Rate Scheme for small businesses (VAT Notice 733, Last updated 29 March 2023), 14. Bad debt relief.

134) 10.5%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납세자가 공급가액 5,000에 상응하는 재화를 공급한 경우를 가정하여 볼 때, 1) 현금주의회계에 의한 경우 대금회수가 정상적이라면 납세자는 고객으로부터 1,000(5,000에 20%의 표준부가가치세율 적용)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했지만 과세관청에는 630(공급대가 6,000의 10.5%의 단일세율 적용)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고 370은 납세자에게 귀속됨. 만일, 납세자가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회수하지 못한다면 납세자는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세액이 없음. 그러나 2) 발생주의회계에 의한 경우 대금회수가 정상적인 경우에는 현금주의회계와 동일하지만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으면 납세

- 계속사업을 전제로 사업체를 양도한 경우 사업양수인은 기존 사업자의 대손세액 공제청구권을 승계함<sup>135)</sup>
- 공급자는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과세연도의 매입세액공제 신청란에 대손세액공제 상당액을 기재하여야 함<sup>136)</sup>
  - 대손세액공제를 매입세액의 일종으로 보는 것으로 보임
  - 과세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매출세액 신고일과 대손세액공제일이 동일할 수 있음<sup>137)</sup>
- 대손세액공제는 공급일 등으로부터 4년 6개월 내 신청분에만 허용됨<sup>138), 139)</sup>
  - 공급자는 대손으로 제각된 대가(전부 또는 부분)의 지급약정일 또는 공급일 중 늦은 날로부터 4년 6개월이 경과되기 전까지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음
    - 1997년 관련 규정 제정 당시에는 청구기한이 3년 6개월이었으나 2009년 4월 부터 4년 6개월로 연장됨<sup>140)</sup>
  - 공급자가 상기 청구기한 내에 대손세액공제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 기납부 매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음
-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 청구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후 대가를 회수한 경우에는 이미 환급받은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sup>141)</sup>

---

자는 자비로 63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을 과세관청에 납부해야 함. 따라서 표준세율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하여 매출세액은 630(공급대가 6,000의 10.5%의 단일세율 적용), 대손세액 공제 1,000(5,000에 20%의 표준부가가치세율 적용)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납세자에게 370이 귀속되도록 조정함(accountingWEB, <https://www.accountingweb.co.uk/tax/business-tax/vat-bonus-on-flat-rate-scheme-bad-debts>, 검색일자: 2024. 1. 4.)

135) Pearce and Taylor(2017), p. 464.

136) HMRC, Relief from VAT on bad debts (VAT Notice 700/18, Last updated 19 June 2020) 2.4 How to claim bad debt relief.

137) 영국정부,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vat-bad-debt-relief/vbdr3100>, 검색 일자: 2024. 1. 3.

138) The Value Added Tax Regulations 1995, s.165A.; s.166(1)

139) Pearce and Taylor(2017), p. 462.

140) The Value Added Tax (Amendment) Regulations 1997 s.10; The Value Added Tax Regulations 1995(01/05/1997 version) s.165A

141) The Value Added Tax Regulations 1995, s.171

- 공급자는 대가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신고서상 매출세액란에 회수액에 대응하는 세액을 기재하고 납부함<sup>142)</sup>
  - 대가 회수시점에 공급자가 더 이상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과세관청에 회수액에 대응하는 세액을 납부해야 함<sup>143)</sup>
- 기존에는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공급받는 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할 의무가 있었으나 2003년 1월 1일 이후로 해당 의무는 폐지됨<sup>144)</sup>
-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로서 관련 공급이 2002년 12월 31일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청구하는 자는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급받는 자에게 아래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 통지일자, 대손세액공제 청구일자, 대손세액공제 청구대상 공급에 대해 발행된 부가가치세 송장 번호 및 날짜, 각각의 공급에 있어 공급자가 대손으로 제각한 금액, 대손세액공제 청구액
  - 2003년 1월 1일 이후로는 매입자에 대한 통지의무가 없음
    - 후술하는 바와 같이 2002년 세법 개정예 의하여 신설된 공급받는 자의 미지급 채무 관련 매입세액공제권의 부인과 연계되어 매입자에 대한 통지의무가 면제된 것으로 생각됨
- 공급자는 대손세액공제 청구 시 청구건별로 아래의 증빙을 구비하고 청구일로부터 4년간 보관하여야 함<sup>145)</sup>
- 관련 법령에 따라 발행되었던 각각의 매출 부가가치세 송장 사본

142) 영국정부,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vat-bad-debt-relief/vbdr4200>, 검색일자: 2024. 1. 3.

143) 영국정부,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vat-bad-debt-relief/vbdr4300>, 검색일자: 2024. 1. 3. ; VAT Notice 700/18 3.14 If you receive payment after claiming bad debt relief.

144) The Value Added Tax Regulations 1995, s.166A

145) The Value Added Tax Regulations 1995, s.167.; s.168.; s.169

- 송장 발부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관련 공급일자, 대가, 공급받는 자를 나타내는 문서

-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 또는 문서
- 장부에서 대가를 대손으로 제각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 또는 문서

#### 다. 공급받는 자에 대한 대응조정

- 영국은 대손세액공제 제도와 특정기한 내 미지급액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부인제도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26A조와 부가가치세 규정 제172F조 내지 제172H조에서 미지급액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부인 내용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 2003년 1월 1일 이전에는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면 공급받은 자가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반환하여야 했음
  - 그 이전에는 매입세액 추징규정 자체가 없다가 1996년 11월 26일 이후 공급분부터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이 추징되는 규정이 마련됨<sup>146)</sup>
    - 대손세액공제 규정을 악용한 조세회피 및 남용계획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됨<sup>147)</sup>
- 200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공급자의 대손세액공제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공급받는 자가 공급일 등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가를 미지급하는 경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반환하도록 개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sup>148)</sup>

146) Croner-i Navigate, [https://library.croneri.co.uk/cch\\_uk/btl/bb-vat-business-brief-09-97-2](https://library.croneri.co.uk/cch_uk/btl/bb-vat-business-brief-09-97-2), 검색일자: 2024. 1. 24.; 영국법령 데이터베이스,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94/23/section/36/1997-03-19>, 검색일자: 2024. 2. 16.

147) HMRC(2015), p. 12.

148) Value Added Tax Act 1994, s.26A.; VAT Regulations 1995, s.172F. s.172H.; 영국정부,

- 공급받는 자가 공급일 또는 지급약정일 중 늦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한 경우, 해당 미지급분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음
    - 별도의 지급약정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은 세금계산서 일자를 지급 약정일로 봄<sup>149)</sup>
  - 공급자의 대손세액공제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6개월 이내 대가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 시에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해야 함
    - 이미 공제받은 부분의 반환을 위한 규정으로 면세사업 겸업 등으로 인해 공통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공제받은 경우에는 미지급액 중 공제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만 반환함<sup>150)</sup>
- 당초 약정된 지급약정일이 변경되는 경우의 매입세액공제 반환 여부는 사안에 따라 살펴보아야 함
- 채권회수를 위해 압류 또는 법적절차 대신 당초의 지급약정일을 연장하여 주는 경우에는 채권관리 활동으로 간주하여 매입세액의 반환 관련 기산일이 변경되지 않음<sup>151)</sup>
  - 수행된 작업에 대한 논쟁으로 분쟁해결 시점까지 지급연기를 당사자 간 합의한 경우에는 수정된 지급약정일을 매입세액 반환을 위한 기산일로 봄<sup>152)</sup>
    -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공급자의 대손세액공제의 신청시기도 이연됨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vat-bad-debt-relief/vbdr1300>, 검색일자: 2023. 12. 26.; Hemmingsley and Rudling(2018), p. 183.

149) Hemmingsley and Rudling(2018), p. 938.

150) Croner-i Navigate, [https://library.croneri.co.uk/cch\\_uk/cxe/notice-700-18-sec-4](https://library.croneri.co.uk/cch_uk/cxe/notice-700-18-sec-4), 검색일자: 2024. 1. 3.; 영국정부,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vat-bad-debt-relief/vbdr6000>, 검색일자: 2024. 1. 3.

151) 영국정부,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vat-bad-debt-relief/vbdr5400>, 2024. 1. 3.

152) 영국정부,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vat-bad-debt-relief/vbdr5500>, 검색일자: 2024. 1. 3.; VAT Notice 700/18 4.4 If you are in dispute with your supplier over the value of supplies made

- 한편 공급받는 자가 상기 6개월의 기간 중 도산절차(insolvency procedure)<sup>153)</sup>에 들어가게 된 경우에는 상기 매입세액 반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sup>154)</sup>
  - 1998년 11월 27일부터 도산절차 이전에 공급받은 재화 등과 관련하여 도산에 들어간 공급받는 자에 대한 미지급 매입세액 반환 면제가 시행됨<sup>155)</sup>
    - 미지급채무에 대한 매입세액은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는데 도산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업거래로 인한 의무를 관재인(insolvency practitioner)에게 면제할 필요가 인정되어 관련 면제규정을 신설함<sup>156)</sup>
  - 도산의 주된 목적 또는 주된 목적 중 하나가 조세회피 목적인 경우에는 매입세액 반환 면제가 적용되지 않음
  - 도산절차가 파산명령(bankruptcy order), 압류판정(award of sequestration), 보호신탁(protected trust deed) 또는 자발적 약정(voluntary arrangement)에 해당하며 파산명령·압류판정·보호신탁이 취소되거나 자발적 약정이 조기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당일로부터 매입세액공제 반환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미지급액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부인 후, 공급받는 자가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다시 매입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음<sup>157)</sup>

153) 도산의 유형으로는 공식적 도산[예: 관리행정(administrative receivership), 파산(bankruptcy), 강제관리(sequestration), 채권자의 자발적 청산(creditors' voluntary liquidation) 등]. 기업회생절차[예: 기업관리(Company administration), 법원관리처분(County court administration order), 약정증서, 자발적 약정 등이 있음(VAT Notice 700/56 2. Types of insolvency; HMRC (2015), pp. 7~8.)

154) Value Added Tax Act 1994, s.26AA

155) 영국정부,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vat-bad-debt-relief/vbdr5700>, 검색일자: 2024. 1. 3.

156) HMRC(2015), p. 12.

157) VAT Regulations 1995, s.172I

### 3. 일본

#### 가. 부가가치세(소비세) 개요

- 일본의 소비세는 발본적 세제개혁을 통해 1988년 1월에 신설되어 1989년 4월부터 시행됨<sup>158)</sup>
  - 발본적 세제개혁은 샤푸프 권고<sup>159)</sup>를 받아들였던 당시의 세제가 일본의 경제사회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세제개혁임
  - 도입 당시 3%의 세율로 시작하여 현재는 점차 인상하여 지방소비세를 포함한 10%의 세율<sup>160)</sup>을 적용하고 있음
  - 일본의 소비세는 유럽 등의 부가가치세와 같이 다단계누적배제형 과세방식(우리나라의 전단계세액공제법과 같음) 구조임
  
- 일본은 2023년 10월부터 적격청구서보존방식(인보이스제도)을 시행함<sup>161)</sup>
  - 기존에는 사업자의 사무부담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장부방식과 청구서보존방식을 시행하였음
  - 2019년 10월 표준세율 인상의 완충재로 경감세율제도를 도입하여<sup>162)</sup> 복수세율이 되면서 적격청구서보존방식을 함께 도입, 4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10월 시행함

158) 寺崎寛之(2022), p. 204.

159) 샤푸프 권고는 연합국 군최고사령관의 요청에 의해 1949년 5월 10일에 일본에 파견된 칼 샤푸프 박사를 중심으로 한 사절단에 의해 작성되어 9월 15일에 발표된 일본 세제의 전면적 개혁안임

160) 일본의 지방소비세는 소비세액을 과세표준액(지방세법 제73조의82)으로 하여 78분의 22의 세율(지방세법 제72조의83)을 적용하므로 소비세율은 2.2%의 지방소비세와 7.8%의 소비세로 구성됨

161) 金井惠美子(2023), pp. 176~178.

162) 일본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소비세율을 8%에서 10%로 인상하는 동시에 '주류외식을 제외한 음식료품'과 '정기구독계약이 체결된 주 2회 이상 발행되는 신문'을 대상으로 8%의 경감세율제도를 시행하여 현재 복수세율을 적용하고 있음(일본 국세청, "輕減稅率制度の概要,"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zeimokubetsu/shohi/keigenzeiritsu/01.htm>, 검색일자: 2024. 1. 3.)

- 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로 등록된 자만이 적격청구서를 발행할 수 있고 적격청구서를 갖추지 않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일본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원칙적으로 개인은 1역년,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임
-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 말일의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함

## 나. 대손세액공제 제도

- 일본의 대손에 관련된 소비세액의 공제(이하 “대손세액공제”라 함)는 소비세 도입 당시 세액공제 등(税額控除等)의 규정을 구성하고 있는 소비세법 제3장에 제39조로 제정하여 1989년부터 시행되었음
- 소비세법은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보다 늦게 도입되었으나 대손세액공제 제도는 1994년에 도입한 우리나라보다 먼저 제정되었으며 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운영되어 있음
- 일본은 사업자가 과세자산의 양도 등을 행하고 외상매출금 기타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이와 관련된 소비세액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에 대한 소비세액에서 공제함<sup>163)</sup>
- 대손세액공제의 취지는 과세매출로 계상한 금액이 후에 대손되어 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면 과세대상의 요건을 사후적으로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는 견해가 있음<sup>164)</sup>
  - 과세대상의 요건은 사업으로서 대가를 얻고 자산을 양도, 대여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것임

163) 「소비세법(消費税法)」 제39조 제1항

164) 金井惠美子(2023), p. 550.

- 대손세액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매출채권 등이 소비세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대손사유에 해당하여야 함
  - 대손사유는 법률상 채권의 소멸, 사실상 대손의 인식, 회계처리에 따른 대손으로 크게 세 가지의 유형으로 나뉘볼 수 있음<sup>165)</sup>
  
- 법률상 채권의 소멸 유형은 다음과 같음
  - 갱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소멸(切捨て)된 외상매출금, 그 밖의 채권(소비세법 제39조 제1항)
  - 재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소멸(切捨て)된 채권(소비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호)
  - 특별청산에 관한 협정의 인가결정에 따라 소멸(切捨て)된 채권(소비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호)
  -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정리절차에 따르지 않고 관계자의 협의 결정으로 소멸(切捨て)된 채권<sup>166)</sup> (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호)
  - 채무자의 재산상황, 지급능력 등으로 보아 채무자가 채무의 전액을 변제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채권(소비세법 시행령 제59조 제3호)
  
- 사실상 대손의 인식 유형은 다음과 같음
  - 채무자의 채무 초과 상태가 상당기간 계속되어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채무의 면제를 실시한 것(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호)
    - 법인세법의 동일 사유에 대한 국세청의 질의응답 사례에 따르면 해당 사유에서 ‘상당기간’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경영 상태를 보아 채권이 회수불능인지 판단하는데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을 의미하며 개별 판단해야 할 사안임<sup>167)</sup>

165) 金井惠美子(2023), p. 552.

166) ① 채권자 집회의 협의 결정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채무자의 부채 정리를 정한 채권이거나  
 ② 행정기관 또는 금융기관 그 밖의 제3자의 알선에 따라 당사자 간 협의로 체결된 계약으로 그 내용이 ①에 준하는 채권일 것

167) 中村慈美(2023), p. 21.

□ 회계처리에 따른 대손은 다음과 같음

- 채무자에게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경우로서 그 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사업자가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비망가액을 공제한 잔액을 대손으로 경리한 것(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호)
  - 계속 거래하던 채무자에 대해 그 자산의 상황, 지급능력 등이 악화하여 해당 채무자와의 거래를 정지<sup>168)</sup>한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해당 채권에 대하여 담보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함)
  - 사업자가 동일지역의 채무자에 대해 보유한 해당 채권의 총액이 회수를 위해 필요한 예비, 기타 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로서 해당 채무자에게 지급을 독촉했음에도 변제가 없는 때

□ 채권을 포기한 경우 소비세액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채권의 전액이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고 봄<sup>169)</sup>

-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는 사실에 대한 기준은 최고재판소의 판결에서 제시한 바 있음
  -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 채무자 측의 사정뿐만 아니라 채권회수에 필요한 노력, 채권액과 추심비용과의 비교형량, 채권회수를 강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다른 채권자와의 갈등 등에 의한 경영적 손실 등과 같은 채권자 측의 사정과 경제적 환경 등을 포함하여 사회통념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봄<sup>170)</sup>
  - 채무자 측의 사정 이외의 사정도 고려대상이 됨을 판결에서 밝혔으나 채무자 측의 사정이 일반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부정하긴 어려우며 개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최고재판소 조사관이 해설한 바 있음<sup>171)</sup>

168) 거래를 정지한 때는 마지막 변제기 또는 마지막으로 변제한 때가 해당 거래를 정지한 이후인 경우에는 이들 중 가장 늦은 때를 말하며, 부동산 거래와 같이 우연한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으로 경리하여도 적용되지 않음(소비세법 기본통달 14-2-1)

169) 東京地判平成27年4月24日判例集未登載.(平成24年(行ウ) 第847号)

170) 最判平成16年12月24日民集第58卷9号2637頁

171) 矢田公一(2018), p. 153.

-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파산 절차의 종결 결정이 있던 날을 채무자가 채무의 전액을 변제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여 소비세액을 영수할 수 없게 된 날로 봄<sup>172)</sup>
  - 파산 절차의 종결 전이라도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배당금액이 없음을 증명받거나, 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도 채무자 자산의 처분이 종료되고 향후 회수를 기대하기 힘든 상태로 파산 종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때에는 파산 종결 결정전 이어도 인정됨
  
- 한편, 법인세법상 대손사유는 소비세법과 거의 동일하나 소비세법과 달리 법으로 규정되어있지 않고 우리나라의 기본통칙과 유사한 기본통달에 규정하고 있음
  - 법률상의 소멸은 법인세법 기본통달 9-6-1과, 사실상 대손의 인식은 기본통달 9-6-2와, 회계처리에 따른 대손은 법인세법 기본통달 9-6-3과 유사함
  
- 표준세율의 경우 과세자산의 양도 등의 세금 포함 가액의 110분의 10을, 경감세율의 경우 108분의 8을 곱한 가액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대손이 발생한 경우 과세 자산의 양도 등이 표준세율 대상인지, 경감세율 대상인지 합리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함<sup>173)</sup>
  
- 과세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거나 면세사업자가 된 경우 및 소규모 사업자는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간이과세자<sup>174)</sup>는 적용받을 수 있음
  - 사업을 폐지한 자, 면세사업자가 된 자는 소비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어 환급신고를 할 수 없음

172) 国税不服審判所裁決平成20年6月26日 裁決事例集No.75 314頁.; 国税不服審判所裁決平成22年7月1日 裁決事例集No.80

173) 「소비세법 시행령」 제60조

174) 「소비세법」 제37조에 의거 일정 규모 하의 중소기업자에 대해서는 선택에 의해 매출세액에 간주 매입률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하여 간단하게 소비세액을 계산할 수 있음. 납세의무의 판정 기준이 되는 기준기간(과세기간 2년 전의 기간) 동안 과세매출이 5천만엔 이하인 면세사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적용대상임

- 과세사업자였던 과세기간에 행한 과세자산의 양도 등에 관련된 외상매출금 등과 관련한 사업을 폐지하거나 면세사업자가 된 후의 과세기간에 대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급신고를 할 수도, 과세사업자였던 과세기간의 신고에 대해 경정청 구도 할 수 없음<sup>175)</sup>

- 소비세법에 따른 소규모 사업자<sup>176)</sup>는 소비세 납세의무가 면제됨
- 소비세법상 현금주의 특례<sup>177)</sup>를 선택한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 간이과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사업자가 과세자산의 양도 등으로 발생한 매출금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비세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함<sup>178)</sup>
  - 대손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액에 대한 소비세액에서 중소기업자의 매입에 관련된 소비세액의 공제특례의 규정에 따라 매입공제세액으로 간주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에서 공제함

□ 재결례에 따르면 대손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sup>179)</sup>

- 대손은 통상의 사업활동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상대방의 파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생하지 않음
- 대손의 부존재라는 소극적 사실의 입증은 상당히 어려운 반면 납세자는 대손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관한 증거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임
- 따라서 납세자가 대손 채권의 발생원인, 내용, 귀속 등 회수불능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하고 대손의 존재를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추인(推認)하여 입증하지 않는 한 사실상 부존재가 추정된다고 봄이 상당함

175) 소비세법 기본통달 14-2-5

176) 「소비세법」 제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자의 과세기간에 대한 기준기간의 과세매출액이 천만엔 이하인 사업자로 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를 말함

177) 「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178) 소비세법 기본통달 13-1-6

179) 金井惠美子(2023), p. 557.

-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대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존하여야 하고 대손 사실과 관련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해야 함
  - 대손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회수할 수 없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말일의 다음날로부터 2월을 경과한 날<sup>180)</sup>부터 7년간 보존하여야 함<sup>181)</sup>
  - 사업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대손 사실과 관련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 비치할 의무가 있으며 장부의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음<sup>182)</sup>
    - 거래상대방의 성명 또는 명칭
    - 대손 연월일
    - 대손에 관련된 과세자산의 양도 등에 관련된 자산 또는 역무의 내용
    - 세율이 다른 경우 세율마다 구분한 대손에 의해 회수할 수 없게 된 금액
  
-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했을 때에는 회수한 대가와 관련한 소비세액을 과세자산의 양도 등에 관한 소비세액으로 간주하여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액에 대한 소비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sup>183)</sup>
  -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거나 면세사업자가 된 경우에는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음<sup>184)</sup>
  - 간이과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사업자가 매출금 등을 회수한 경우에는 소비세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함<sup>185)</sup>
    - 회수한 매출금 등에 관련된 소비세액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액에 대한 소비세액에 가산함
  
- 일본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한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음

180) 「소비세법」 제45조에 따른 확정신고 기한과 일치함

181) 「소비세법」 제39조 제2항, 「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9조

182) 「소비세법」 제71조 제1항, 「소비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5호

183) 「소비세법」 제39조 제3항

184) 소비세법 기본통달 14-2-5

185) 소비세법 기본통달 13-1-6

#### 다. 공급받는 자에 대한 대응조정

- 일본은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거래상대방의 세액을 대응조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 4. 프랑스

#### 가. 부가가치세(Taxe sur la valeur ajoutée) 개요

- 프랑스는 1954년 4월 부가가치세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유럽연합 부가가치세 지침의 모델이 되었음
  - 부가가치세법은 조세일반법(Code général des impôts, 이하 “CGI”)의 국세 중 간접세 부분인 제1부 제2편에 제1장으로 규정되어 있음
  - 프랑스의 부가가치세는 소비형 부가가치세제이고 4개의 복수의 세율을 채택하고 있음
- 납세의무자는 매출액과 전년도 매출세액에 따라 신고의무가 다르게 결정됨<sup>186)</sup>
  - 일반과세자(régime réel normal)의 경우 월별 신고의무가 있으며 연간 부가가치세 납부액이 4,000유로 미만인 경우에는 분기별 신고를 선택할 수 있음
  - 전년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고 부가가치세 납부액이 15,000유로 미만인 간이과세자(régime simplifié d'imposition)는 7월과 12월에 각각 전년도 부가가치세의 55%, 40%를 중간예납하고, 사업연도 종료 후 신고납부 함

186) 프랑스 국세청, “LES RÉGIMES D’IMPOSITION À LA TVA,” <https://www.impots.gouv.fr/professionnel/les-regimes-dimposition-la-tva>, 검색일자: 2024. 1. 31.

- 프랑스의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성립한 날에 확정되거나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용역의 공급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sup>187)</sup>
  -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실무상 권리를 이전하고 송장이 발행된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확정됨
  -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용역제공의 완료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지만 대가를 수령한 날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원칙임. 다만, 납세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 성립일에 확정될 수 있음
    - 송장은 원칙적으로 용역이 제공되고 배송된 때에 발행함<sup>188)</sup>

## 나. 대손세액공제 제도

- 프랑스는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당시부터 대손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해 옴
  - 1988년 12월 30일 이전에는 미지급(impayé)의 경우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음
  - 이후 채권이 확정적 회수불능(définitivement irrécouvrables)인 경우에 공제할 수 있으나 법원의 결정이 있는 때에도 공제가 가능하도록 개정됨<sup>189)</sup>
- 프랑스는 대부분 대금을 수령하기 전에 과세 시점이 도래하는 재화의 공급에만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됨<sup>190)</sup>
  -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유효한 지급이 있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때문에 용역을 공급하고 송장을 발행한 때를 납세의무의 확정시기로 하는 발생주의를 선택(option pour le débits)한 경우에만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됨

187) EY(2023), p. 671.

188) 「조세일반법(CGI)」 제289조 제 I-3항

189) Article 16 de la loi n° 88-1193 du 29 décembre 1988 de Finances rectificative pour 1988

190) EY(2023), p. 675.

- 프랑스는 법률에 대손사유를 열거하거나 명시하지 않고 확정적 회수불능인 경우 대손 세액공제를 적용한다는 원칙만 규정함<sup>191)</sup>
  - CGI 제272조 제1항에 해지나 취소 등의 경우와 조문을 함께 두어 대손 관련 부가 가치세액을 매입세액처럼 취급하여 공제 또는 환급함
  - 세액 공제 또는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공급자가 회수불능채권임을 입증해야 하고 단순히 지급기한 내에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거쳐야 함<sup>192)</sup>
  
-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입증하면 확정적으로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음<sup>193)</sup>
  -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제기한 소송이 실패한 경우
  - 적절한 회수 조치의 실패를 인정받아 보험사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 보상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회수 불가능 채권임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를 상대로 한 모든 조치에 실패했다는 선행되는 사실이 회수 불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임<sup>194)</sup>
  - 채무자가 주소를 남기지 않고 사라진 경우
  - 도난수표로 지급되었음을 확인하거나 부도수표로 결제되어 모든 법적 구제수단을 이행한 경우
  
- 법정 청산을 선언하는 법원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수불능채권임을 입증하지 않고 세액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음
  - 기업회생과 법정청산 관련 법률 등에 따라 이루어지는 채무 탕감에 동의하거나 채무자와 합의한 공급자는 채무불이행 고객에게 청구하였으나 회수하지 못하고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회수할 수 있음<sup>195)</sup>

191) 「조세일반법」 제272조 제1항

192) 프랑스 과세당국 유권해석 BOI-TVA-DED-40-10-20, 40문단

193) BOI-TVA-DED-40-10-20, 40문단

194) 프랑스 공공재정총국, <https://bofip-archives.impots.gouv.fr/bofip/31327-AIDA.html/identifiant=3E1414-19961102> (검색일자: 2024. 1. 17.)

- 실제로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되는 날은 판결 선고일 이후 청산 업무 종료가 선고된 날이지만, 완전히 회수 불가능해지기 전인 법원의 결정이 있는 날에 공제 또는 환급을 허용하여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조치함<sup>196)</sup>
- 팩터링 회사가 인수한 채권이 회수불능인 경우에도 공급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sup>197)</sup>
  - 팩터링 회사는 인수한 채권에 대한 회수 책임이 있고 재화의 공급자가 기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회수를 위한 소송이 실패하였다는 사실 등 회수불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
  - 회수한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팩터링 회사가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공급자와의 계약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대손세액이 공급자에게 귀속되면 공급자 이익의 실현으로 보고 팩터링 회사에 귀속되면 인수한 채권의 비율 감소로 봄
- 한편 2022년 11월, 회수 불가능성에 대한 조건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법안이 2023년 재정법 개정안으로 제출된 바 있으나 통과되지는 못함<sup>198)</sup>
  - 법안을 발의한 상원의원은 CGI 제272조와 프랑스 국세청(BOFIP)이 회수 불가능성, 실패한 소송의 성격, 조건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기업들이 적용하기에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함
  - 프랑스의 미지급 채권이 평균적으로 GDP의 2%에 달하고 파산, 물가 상승, 세수 감소 등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어 기업의 현금흐름을 지원해야 함
  - 따라서 “제1항에 언급된 확정적으로 회수 불가능한 채권의 성격은 국무원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 위원 또는 인가된 회사가 작성한 증명서의 제출로 증명한다.”<sup>199)</sup>는 문구를 제272조 제2항에 추가하여 보완하고자 하였음

195) BOI-TVA-DED-40-10-20, 120문단

196) BOI-TVA-DED-40-10-20, 130문단

197) BOI-TVA-DED-40-10-20, 190문단

198) pappers politique, <https://politique.pappers.fr/amendement/n1306-projet-loi-finances-2023-SNAMD1225865>, 검색일자: 2024. 1. 31.

- 한편, 프랑스는 법인세 목적으로 회수불능채권의 금액을 과세대상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sup>200)</sup> 회수 불가능성의 판단기준이 부가가치세의 대손세액공제 판단기준과 동일한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 일반 공제 조건에 따라 회수불능채권을 공제할 수 있으나 회수불능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음
    - CGI 제39조 제1항에 따라 현재 사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명백한 손실이나 비용을 해당 회계연도에 기록하여 공제할 수 있음
  - 손실로 공제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관련된 채권이어야 하며 영업활동과 무관하게 발생한 채권은 공제할 수 없음
  - 과세대상 회계연도에 실제로 손실이 확정되어 장부상 기재되어 있어야 함
    - 회계연도 종료 후 파산 선고된 채권은 해당 회계연도의 손실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부가가치세를 공제 또는 환급받기 위해서 공급자는 특정 문구를 기재한 송장 사본을 거래상대방에게 보내야 함<sup>201)</sup>
  - 회수불능채권은 부채와 공급자의 당초 공급이 변경된 것이 아니어서 당초 송장을 수정하지 않음
  - 송장 사본에 해당 송장의 금액이 미지급 상태이며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을 알리는 문구<sup>202)</sup>를 기재하여야 함

---

199) 원문은 아래와 같음

« Le caractère définitivement irrecouvrable des créances mentionnées au premier alinéa du 1 est attesté par la production d'un certificat établi par un commissaire de justice ou une société de recouvrement agréée dont les modalités sont fixées par décret en Conseil d'État. »

200) BOI-BIC-CHG-60-20-10, 80-110문단 ([https://bofip.impots.gouv.fr/bofip/3438-PGP.html/identifiant=BOI-BIC-CHG-60-20-10-20210224#Creances\\_irrecouvrables\\_12](https://bofip.impots.gouv.fr/bofip/3438-PGP.html/identifiant=BOI-BIC-CHG-60-20-10-20210224#Creances_irrecouvrables_12), 검색일자: 2024. 2. 1.)

201) BOI-TVA-DED-40-10-20, 40문단; 70문단; 110문단

202) 기재해야 하는 문구의 원문은 아래와 같음

« facture impayée pour la somme de ..... euros (HT) et pour la somme de ..... euros (taxe correspondante) qui ne peut faire l'objet d'une déduction »

- 미지급된 송장이 다수인 경우 송장 요약명세서(état récapitulatif)를 보내면, 각 송장에 대한 사본을 보낼 필요는 없음
    - 당초 송장의 주문번호, 내용, 날짜,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사본에 기재해야 하는 위의 문구를 요약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함
    - 요약명세서는 공급자가 보관하여야 하며 세무서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함
  - 채무자가 실종된 경우에 송장 정정 절차는 면제됨
- 판례는 송장 사본을 거래상대방에게 보내는 위의 형식적 절차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sup>203)</sup>
- 해당 절차는 부가가치세의 정확한 징수를 보장하고 부정행위를 방지하며 세수손실 위험을 제거하기 위함임
  - 법적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회수 불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 또는 환급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시스템의 중립성에 위배되지 않음
- 회수불능채권이 확정된 때에 공급자에게 공제권이 발생하고 공제세액을 신고서에 기재하고 제출해야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음<sup>204)</sup>
- 일반과세자는 CA3 신고서의 라인 21에, 간이과세자는 CA12 신고서의 라인 25에 기재하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대손세액은 회수불능채권으로 판정된 날의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공제가 가능함
- CGI 부속서II는 신고서에 공제가 누락된 경우에 해당 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다음 해 12월 31일 이전에 신고하는 후속 신고서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는 일반 공제 기한 규정<sup>205)</sup>을 두고 있으며 대손세액공제도 이에 따름<sup>206)</sup>

203) CAA de BORDEAUX, 4ème chambre, 24/05/2022, 20BX00148, Inédit au recueil Lebon, [https://www.legifrance.gouv.fr/ceta/id/CETATEXT000045832892?init=true&page=1&query=20BX00148&searchField=ALL&tab\\_selection=all](https://www.legifrance.gouv.fr/ceta/id/CETATEXT000045832892?init=true&page=1&query=20BX00148&searchField=ALL&tab_selection=all), 검색일자: 2024. 1. 18.

204) 「조세일반법 부속서II」 제208조 I

- 법원의 결정에 의해 대손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날부터 일반 공제규정에 따라 청산 업무 종료가 선고되어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의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공제할 수 있음<sup>207)</sup>
  - 채무불이행 기업이 회생계획 중단 및 활동 지속 판결을 받은 날
    - 판결일에 미지급 채권의 비율을 알 수 있음
  - 법정 청산 판결이 선고된 날
    - 법정관리인의 증명서나 종결 판결을 기다릴 필요가 없음
- 프랑스는 회수불능채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회수한 이후 대금을 회수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음

#### 다. 공급받는 자에 대한 대응조정

-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급자로부터 송장 사본 또는 요약명세서를 받은 자는 당초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금액을 납부해야 함<sup>208)</sup>

## 5. 네덜란드

### 가. 부가가치세제 개요

- 네덜란드는 1969년에 부가가치세제를 도입하였으며 1997년부터 EU 부가가치세 제6차 지침에 부합하게끔 개정된 법령이 시행되고 있음<sup>209)</sup>

205) 「조세일반법 부속서II」 제208조 I

206) 프랑스는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 세무조사가 실행되므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제도는 존재하지 않음(안창남(2009), p. 350.)

207) BOI-TVA-DED-40-10-20, 50문단

208) BOI-TVA-DED-40-10-20, 110문단

- 네덜란드는 EU 회원국으로 소비형 부가가치세제를 운영하고 있음
  
- 네덜란드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과세하는 발생주의회계를 채택하고 있으나, 일부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한 현금주의회계를 인정하고 있음
  -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시점(또는 발행되어야 하는 시점)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됨<sup>210)</sup>
  -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법률에 열거된 업종(예: 미용업, 식당, 상점), 공급받는 자의 대부분(최소 80% 이상)이 비사업자인 사업자 등은 납세자가 선택하는 경우 현금주의회계를 적용할 수 있음<sup>211)</sup>
  
-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분기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sup>212)</sup>
  - 납세자는 과세기간(분기)별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 납세자의 특별요청(예: 수출업자), 과세당국의 요구(예: 정기적 연체자)에 의한 경우 매월 신고·납부할 수도 있음
  - 다만, 소규모 사업자는 과세기간을 1년으로 선택할 수 있음
    - 연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1,883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연 단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음

209) IBFD - Netherlands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1. Introduction (Last Reviewed: 10 September 2023)

210) Wet op de omzetbelasting 1968(네덜란드 부가가치세법), s. 13(1)

211) IBFD - Netherlands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5. Time of Taxation - 5.1.5. Cash accounting(Last Reviewed: 10 September 2023); Wet op de omzetbelasting 1968, s. 26

212) IBFD - Netherlands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11. Administrative Obligations - 11.4. VAT returns and remittance of VAT (Last Reviewed: 10 September 2023); Belastingdienst(네덜란드 과세당국), [https://www.belastingdienst.nl/wps/wcm/connect/bldcontentnl/belastingdienst/zakelijk/btw/btw\\_aangifte\\_doen\\_en\\_betalen/btw-aangifte-+waar-moet-u-aan-denken/aangiftetijdvak](https://www.belastingdienst.nl/wps/wcm/connect/bldcontentnl/belastingdienst/zakelijk/btw/btw_aangifte_doen_en_betalen/btw-aangifte-+waar-moet-u-aan-denken/aangiftetijdvak), 검색일자: 2024. 1. 11.

## 나. 대손세액공제 제도

- 네덜란드는 부가가치세법(Wet op de omzetbelasting 1968) 제29조를 통해 대손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음
  - 대손세액공제는 세액 환급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제6장 기타 조항(Hoofdstuk VI. Diverse bepalingen)에 규정되어 있음<sup>213)</sup>
  - 네덜란드는 대손세액공제만을 규정하는 별도의 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며, EU 부가가치세 지침과 같이 과세표준의 감액 및 기납부세액의 환급과 관련된 일반 조항에서 대손세액공제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은 공급과 관련된 계약의 취소, 해지, 해산,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미납(즉, 대손 상황) 및 재화 및 용역의 공급 후 가격이 인하되는 경우 공급자는 공급가액을 감액하고 관련하여 기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 1969년 부가가치세제 도입 당시부터 대손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함<sup>214)</sup>
  
- 네덜란드는 대손 관련 부가가치세액을 조기에 환급하고 절차를 단순화하며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2017년에 대손세액공제 제도를 개정하였음<sup>215)</sup>
  - 2017년 이전에는 공급자는 대손이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정기 부가가치세 신고와는 별도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했음
  - 이에 대해 채권 발생 후 대손세액공제 신청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문제가 지적됨

213) 네덜란드 정부, <https://wetten.overheid.nl/BWBR0002629/2024-01-01#HoofdstukVI>, 검색일자: 2024. 1. 11.

214) Heijnen(2018), p. 334.

215) Parlementaire Monitor, <https://www.parlementairemonitor.nl/9353000/1/j9vvij5epmj1ey0/vk7ofbgrfaxs>, 검색일자: 2024. 1. 12.; RSM, <https://www.rsm.global/netherlands/en/news/recovery-vat-bad-debts>, 검색일자: 2024. 1. 12.; Deloitte,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global/Documents/Tax/dttl-tax-global-indirect-tax-news-january-2017.pdf>, 검색일자: 2024. 1. 12.

- 납세자가 대손시기를 재량적으로 판단해야 함에 따라 대손세액공제가 너무 일찍 또는 너무 늦게 제출되는 문제<sup>216)</sup>가 있음
  - 공급받는 자가 파산하는 경우 채권의 미회수가 확정되어 과세당국에 입증하여 인정되기까지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납세자와 과세당국 모두에게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함
  - 대손이 늦게 확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부담뿐만 아니라 의도치 않은 재정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 정기 부가가치세 신고와는 별도의 공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함에 따라 납세자와 과세당국 모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움
  - 이에 따라 2017년 조세단순화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 관련 규정이 개정됨<sup>217)</sup>
  - 이하에서는 2017년 개정되어 현재 적용되고 있는 대손세액공제 규정을 살펴 봄
- 과세사업자가 적법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의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납부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은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함
- 네덜란드는 대가의 미지급이 발생한 때에 대손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만 규정하고 대손사유를 별도로 열거 또는 예시하고 있지 않았음
- 다만, 실무상으로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정상적인 상업행위(standard commercial action)가 이루어졌고 채무자가 도산 절차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야 함<sup>218)</sup>

216) 대손세액공제를 법정시기 외에 청구하는 경우 대손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너무 늦게 신청하는 경우 이의신청 및 경정청구권이 소멸되는 문제가 발생함

217) Fiscale vereenvoudigingswet 2017(조세간소화법), s. 6

218) IBFD - Netherlands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6. Taxable Amount - 6.1. Domestic supplies of goods and services - 6.1.5. Adjustment of taxable amount (Last Reviewed: 10 September 2023)

- 그러나 2017년부터는 이에 추가하여 지급약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지급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sup>219)</sup>
  - 기존에는 공급자의 채권회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것이 확실 시되는 경우에만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음
  - 그러나 2017년부터는 이와는 별도로 지급약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가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손으로 간주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
    - 회수 노력에 대한 입증책임 없이 1년을 경과한 채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 대금 지급약정일은 일반적으로 계약서 또는 송장에 명시된 최종지급일이며, 만약 약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 지급기한인 30일로 함
  
- 한편, 법인세 목적상 대손 여부는 자산평가의 일반원칙에 따라 건전한 상관행에 의해 평가되며, 회수 불가능에 대한 구체적 정의 및 예시 규정은 없음
  - 네덜란드 법인세법상 소득이란 '건전한 상관행(sound business practice)'에 의해 계산되어야 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으나 건전한 상관행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sup>220)</sup>
    - 건전한 상관행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축적된 판례에 의해 판단되고 있으며, 조세 법의 다른 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업회계원칙(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에 의한 경우 건전한 상관행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음
    - 건전한 상관행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신중하고(prudence) 일관되며(consistency)

219) Wet op de omzetbelasting 1968, s. 29(2) ; IBFD - Netherlands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6. Taxable Amount - 6.1. Domestic supplies of goods and services - 6.1.5. Adjustment of taxable amount(Last Reviewed: 10 September 2023)

220) IBFD - Netherlands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2. Taxable income 1.2.1. General (Last Reviewed: 30 November 2023); Bouwman and Boer(2023), pp. 317~318.

- 계속성(Continuity)을 갖추어야 함
  - 실무적으로 법률 조항을 준수하고 기업회계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소득계산 방법에 재량권이 있음<sup>221)</sup>
- 채권의 대손 여부 또한 건전한 상관행에 따라 회계연도 말에 평가되며, 채권별로 평가되거나 일괄하여 일정 비율의 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음<sup>222)</sup>
  - 대법원은 충당금 설정 방법은 채권자의 수가 많을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으로 판시함
- 채권의 회수 가능성은 개별 채무자와 관련된 모든 구체적이고 특정한 사안을 고려하여 평가되어야 함<sup>223)</sup>
  - 회수 불가능 여부에 대한 정의 규정 및 예시 규정은 없음
- 공급자는 대손이 발생한 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서 매출 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여야 함<sup>224)</sup>
  - 대손세액공제를 음(negative)의 매출세액으로 보고 있음
  - 부가가치세법은 대손 확정시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손이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시점부터 대손세액공제 청구권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공급받는 자에게 어느 정도의 재량권이 있음<sup>225)</sup>
    - 대손이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때로부터 대손이 확정되는 시점까지의

221) 예를 들어, 네덜란드 법인세법은 감가상각대상, 감가상각방법에 대해 건전한 상관행 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IBFD - Netherlands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 Corporate Income Tax - 1.5.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 1.5.1. General principles (Last Reviewed: 30 November 2023))

222) IBFD - Netherlands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 Corporate Income Tax - 1.3. Valuation - 1.3.4. Debt claims and liabilities(Last Reviewed: 30 November 2023);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document/XPV29Q18#section\(5\)\\_0](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document/XPV29Q18#section(5)_0), 검색일자: 2024. 1. 16.; Spenke and Vries(2011), p. 45.

223) Bouwman and Boer(2023), p. 318.

224) Wet op de omzetbelasting 1968, s. 29(4); IBFD - Netherlands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6. Taxable Amount - 6.1. Domestic supplies of goods and services - 6.1.5. Adjustment of taxable amount(Last Reviewed: 10 September 2023)

225) Heijnen(2018), p. 453.

기간에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 신청시점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견해임

- 이에 대해 2019년 7월 네덜란드 대법원은 대손이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시점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기한과 대손시점이 상이한 경우 과세관청이 환급을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판시함<sup>226)</sup>
  - 네덜란드 대법원 역시 공급자에게 대손 확정시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재량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최소한 대손이 확실한 시점(예: 법적청구권 소멸) 안에는 신청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시함

□ 대손세액공제 신청 시 공급자의 공급받는 자에 대한 통지의무가 없음<sup>227)</sup>

- 공급자가 미회수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채권의 양수인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sup>228)</sup>
  - 실무적으로 공급자가 부실채권을 팩터링 회사에 양도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기업의 행정부담과 과세당국의 행정비용 감소를 목적으로 2017년 세법개정을 통해 도입됨<sup>229)</sup>
  - 미회수채권의 양수자는 양도일 이후 발생하는 양수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청구권을 승계함
  - 다만, 공급자의 일반적인 대손세액공제와는 달리 미회수채권의 양수자는 정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와는 별도의 서식에 의해 청구건별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여야 함<sup>230)</sup>

226) nr. 17/04083, ECLI:NL:HR:2019:85, 2019. 6. 7.;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dcl\\_nl\\_2019-06-07\\_1%23dcl\\_nl\\_2019-06-07\\_1](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dcl_nl_2019-06-07_1%23dcl_nl_2019-06-07_1), 검색일자: 2024. 1. 11.

227) KPMG,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xx/pdf/2020/04/indirect-tax-treatment-of-bad-debts-a-multijurisdictional-analysis.pdf>, 검색일자: 2024. 1. 4.

228) Wet op de omzetbelasting 1968, s. 29(6); EY, [https://www.ey.com/en\\_gl/tax-alerts/netherlands---key-considerations-for-final-vat-return-of-2018](https://www.ey.com/en_gl/tax-alerts/netherlands---key-considerations-for-final-vat-return-of-2018), 검색일자: 2024. 1. 12.

229) <https://www.parlementairemonitor.nl/9353000/1/j9vvij5epmj1ey0/vk7ofbgrfaxes>, 검색일자: 2024. 1. 12.

230) Wet op de omzetbelasting 1968, s. 29(10)

-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 청구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후 대가를 회수한 경우 등에는 이미 환급받은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sup>231)</sup>
  - 기존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부분에 대한 대가를 회수하는 경우,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서 매출세액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기 환급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함
  - 2017년 대손세액공제 규정 개정 이전에는 대가를 회수하지 못하는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에만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었으므로 대가의 회수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음
  - 2017년부터 미지급의 확정 여부에 불문하고 지급약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대손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함에 따라, 세수보호를 위해 추후 대가를 회수한 경우 기 환급세액의 반환규정을 신설함

#### 다. 공급받는 자에 대한 대응조정

- 네덜란드는 대손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서 매입자의 미지급액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부인을 함께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 같이 대손세액공제와 공급받는 자에 대한 대응규정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음
-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자가 미지급대가를 향후에 지급할 수 없거나 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되는 때에는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반환하여야 함<sup>232)</sup>

231) Wet op de omzetbelasting 1968, s. 29(5); IBFD - Netherlands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6. Taxable Amount - 6.1. Domestic supplies of goods and services - 6.1.5. Adjustment of taxable amount (Last Reviewed: 10 September 2023); Parlementaire Monitor, <https://www.parlementairemonitor.nl/9353000/1/j9vvij5epmj1ey0/vk7ofbgrfaxs>, 검색일자: 2024. 1. 12.

232) Wet op de omzetbelasting 1968, s. 29(7)

- 공급자의 대손세액공제 신청이 매입세액 환급의 전제조건에 해당하지 않음
  - 대손이 확정된 과세연도의 신고서를 통해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반환해야 함
- 다만, 이에 추가하여 대금 지급약정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미지급 상태인 경우에는 해당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반환하여야 함<sup>233)</sup>
- 대손세액공제 적용요건을 완화함과 동시에 매입세액의 반환규정도 개정됨<sup>234)</sup>
    - 2017년 이전에는 대금 지급약정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미지급인 경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음
    - 2017년에 공급자 입장에서 지급약정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대손세액공제를 청구하도록 개정하면서 매입세액 반환규정도 개정함<sup>235)</sup>
- 미지급액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부인 후, 공급받는 자가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다시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음<sup>236)</sup>
-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상응하는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음

233) IBFD - Netherlands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9. Deduction and Refund of Input Tax - 9.4. Adjustment of initial input tax deductions (Last Reviewed: 10 September 2023)

234) Parlementaire Monitor, <https://www.parlementairemonitor.nl/9353000/1/j9vvij5epmj1ey0/vk7ofbgrfaxs>, 검색일자: 2024. 1. 12.; 네덜란드 정부, <https://wetten.overheid.nl/BWBR0002629/2024-01-01/0?VergelijkMet=BWBR0002629%3fg%3d2016-05-01%26v%3d0>, 검색일자: 2024. 1. 12.

235) 관련하여 채권·채무 당사자가 아닌 과세당국이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대손세액공제 상당액을 자체 조달하여야 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으며, 공급받는 자의 파산 시 발생할 수 있는 과세당국의 악성 채납채권을 줄일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네덜란드 정부, [https://www.internetconsultatie.nl/vereenvoudiging\\_belastingteruggaaf\\_oninbare\\_vorderingen/reactie/b5cf5775-7545-4c51-bd8b-a4d39ac77a3d](https://www.internetconsultatie.nl/vereenvoudiging_belastingteruggaaf_oninbare_vorderingen/reactie/b5cf5775-7545-4c51-bd8b-a4d39ac77a3d), 검색일자: 2024. 1. 12.)

236) Wet op de omzetbelasting 1968(네덜란드 부가가치세법), s. 29(8)

## 6. 호주

### 가. 부가가치세(Goods and Services Tax) 개요

- 호주는 2000년 7월에 유럽형 모델을 따른 부가가치세(Goods and Services Tax, 이하 “GST”라 함)를 도입함
  - 호주의 부가가치세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납세자는 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동 기간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세액을 구함
  - 호주의 부가가치세 세율은 10%로 단일세율을 적용함
- 호주는 원칙적으로 비현금기준(non-cash basis) 회계방식을 GST 회계방식으로 채택하고 있으나, 소규모 사업체 등은 예외적으로 현금기준(cash basis) 회계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sup>237)</sup>
  - 현금기준 회계방식을 따르면 대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에 GST를 신고하고 대금을 지급한 때에 매입세액공제(GST credit)를 받을 수 있음
    - 총매출액이 1,000만호주달러 미만인 소규모 사업체이거나 소득세에 대해 현금주의 회계방식을 사용하는 기업이 선택할 수 있음
  - 비현금기준 회계방식을 따르면 대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GST를 신고하고 대금 지급 전 세금계산서를 받았거나 지급한 때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단, 매입세액공제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하나 4년 이내 신고하면 공제할 수 있음
- 납세자는 월별, 분기별, 연별 과세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사업활동보고서(Business Activity Statement; BAS) 제출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함

237) 호주 국세청, “Choosing an accounting method for GST,” <https://www.ato.gov.au/businesses-and-organisations/gst-excise-and-indirect-taxes/gst/accounting-for-gst-in-your-business/choosing-an-accounting-method>, 검색일자: 2024. 1. 31.

- 일반적으로는 분기별 과세기간을 적용하나 매출 규모,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강제적 또는 선택적으로 월별 과세기간을 적용받기도 함

## 나. 대손세액공제 제도

- 호주의 대손세액공제 제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조정(GST adjustment)은 부가가치세법(A New Tax System(GST) Act 1999)의 기본규칙에 대한 장(Chapter 2. The basic rules)에서 납부세액과 조정(Net amounts and adjustments)을 다루고 있는 제2-4편의 제21조로 규정하고 있음
  - 조정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이후 어떠한 사건이나 상황으로 인해 납부하거나 공제 받을 세액이 잘못된 경우에 필요함<sup>238)</sup>
    - 조정사건(adjustment events)의 발생, 채권의 대손 또는 연체, 공제목적 범위의 변경 등의 경우 조정이 필요함
    -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늘어나거나 매입세액공제가 줄어들어 순 부가가치세액(the net amount of GST)이 증가하면 증가조정이 이루어지고, 그 반대의 경우 감소조정이 이루어짐<sup>239)</sup>
- 공급자가 회수불능채권에 대해 감소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sup>240)</sup>
  - 과세대상 공급(taxable supply)<sup>241)</sup>이 있었을 것
    - 영세율(GST-free supplies)이나 면세(input taxed supplies) 공급에 대해서는 감소조정을 할 수 없음
  - 해당 공급 관련 부가가치세를 과세기간에 귀속시켰을 것

238) Wolters Kluwer(2023), ¶34-145

239) ANTS(GST)A99 19-50, 19-55, 19-75, 19-80, 19-85

240) ANTS(GST)A99 21-5

241) ANTS(GST)A99 9-5 대가를 받고, 사업을 위해 이루어지며, 호주와 관련되어,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등록의무가 있는 자가 행하는 영세율이나 면세가 아닌 공급이 과세대상 공급임

- 대손처리를 한 시점이 공급시기와 동일 과세기간인 경우에도 공급에 대한 부가  
가치세와 조정 금액은 상계처리 없이 별도로 기재하여 사업활동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함
  - 공급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였을 것
  - 채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대손처리 하였거나 회수기일이 12개월 이상 경과하였을 것
- 위의 요건 중에서 회수기일이 12개월 이상 경과하기 전에 감소조정을 하려면 회수  
불능채권에 해당하여야 함<sup>242)</sup>
- 유권해석(TR92/18)에 의하면 회수불능채권 여부의 판단기준은 호주 소득세법<sup>243)</sup>  
상 회수불능채권을 판단하는 기준을 준용하도록 해석하고 있음
  - 대손 여부는 사업상 타당한 판단(sound commercial judgement)에 따른 것  
이어야 하며, 논쟁이 진행 중인 경우 회수불능채권이 될 수 없음
- 거래를 둘러싼 모든 요소와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회수불능채권 여부를 판단  
함<sup>244)</sup>
- 일반적으로 아래의 경우에 대손으로 인정될 수 있음
    - 채무자가 부채를 갚을 자산이 충분하지 않거나 없는 채로 사망한 경우
    - 채무자를 찾을 수 없거나 채권자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자산의 존재 또는 소  
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받는 경우
    - 법인인 채무자가 청산 중이어서 채무 전액을 변제할 수 없거나 일부가 회수불능  
인 경우
    - 모든 사실을 객관적으로 고려할 때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악화할 가능성이  
존재하여 채무를 변제하리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242) GST Ruling GSTR 2000/2, 37-38문단

243) 호주의 소득세(Income Tax)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

244) Taxation Ruling TR92/18, 31문단

- 회수불능채권으로 인정되기 위해 채권자가 회수를 위해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부상 대손처리만이 아닌 회수하려는 아래 예시와 같은 시도가 있었어야 함<sup>245)</sup>
    - 독촉장을 발행하고 전화나 메일로 연락을 시도함
    - 기존의 상환만기일로부터 합리적 기간을 부여
    - 공식적으로 상환 요구 통지
    - 소환장을 발행하여 송달
    - 채무불이행 채무자에 대한 소송
    -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 이자의 계산 및 부과를 중단하고 계좌 폐쇄
    - 채무에 대한 담보 평가
    - 압류 또는 압류자산의 매각
  - 회수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감소조정을 하려는 납세자에게 있음
- 회수기일이 12개월 이상 경과하기 전에 감소조정을 하려면 대손으로 처리(writing off)하여야 하고 대손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채권이 존재해야 함<sup>246)</sup>
- 대손 사실은 서면 기록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예로 장부상 대손처리가 있음
  - 호주 소득세법에 따라 채권을 청산, 협의 또는 소멸시킨 후에는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대손처리를 할 수 없는데, 이는 부가가치세의 감소조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대손으로 처리하기 전 또는 1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청산 등으로 이미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감소조정을 할 수 없으며, 이는 공급대가의 변경<sup>247)</sup>에 해당하여 조정 사건으로 취급될 수 있음

---

245) Taxation Ruling TR92/18, 32문단

246) GST Ruling GSTR 2000/2, 43-46문단

247) ANTS(GST)A99 19-10(1)(b)

- 현금기준 회계에서는 대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sup>248)</sup>
  - 현금기준 회계방식을 선택한 소규모 사업체 또는 소득세에 대해 현금주의 회계 방식을 사용하는 기업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sup>249)</sup>
  - 공급한 자만이 해당 공급 관련 대손에 대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양수인의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자격이 없음
  
- 한편, 소득세법에서는 회수불능채권을 대손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sup>250)</sup> 이에 대한 예시적 기준을 부가가치세법에서 준용하고 있음
  - 공제(deduction)를 신청한 과세연도에 대손처리를 해야 하고 대손 채권이 해당 과세연도 또는 이전 과세연도에 과세대상 소득이었어야 함<sup>251)</sup>
    - 장부상 대손처리가 필수는 아니나 물리적으로 대손처리(writing off) 하여야 하고 관련 사실에 대해 서면으로 기록한 서류가 있어야 함
    - 납세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공제 전에 소유권 연속성 테스트(the continuity of ownership test)<sup>252)</sup> 또는 사업 연속성 테스트(the business continuity test)<sup>253)</sup>를 통과해야 함<sup>254)</sup>
  - 소득세법상으로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처럼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대손으로 공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음
  
- 조정은 인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귀속시기로 함<sup>255), 256)</sup>

248) ANTS(GST)A99 21-5(2), 21-15(2)

249) GST Ruling GSTR 2000/2, 47문단

250) ITAA97 25-35

251) Wolters Kluwer(2023), ¶ 16-582

252) 이전 소득연도에 발생한 채권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채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공제하는 소득연도 말 까지 회사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함

253) 소유자의 동일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을 공제하는 연도 전체기간에 테스트 이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수행해야 함

254) Wolters Kluwer(2023), ¶ 3-150

- 공급자가 대손처리를 한 경우에는 대손처리를 한 때 감소조정 함
  - 회수기일이 12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의 경우 12개월 이상이 지났음을 인식한 때에 감소조정 함<sup>257)</sup>
- 회수기일이 12개월 이상 경과하기 전에는 장부상 대손처리를 통해서, 회수기일이 12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는 해당 사실을 인식한 때에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회수불능채권에 대한 조정기한이 없는 것으로 보임<sup>258)</sup>
- 공급자가 감소조정을 한 경우에 대손 처리한 사실을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할 필요는 없음
- 1998년 호주의 부가가치세법안이 최초로 발의되었을 때에는 조문상 공급자가 대손처리를 한 경우에 공급받는 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었음<sup>259)</sup>
  - 그러나 상업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not desirable from a commercial point of view)는 의견이 제기되어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대신에 회수기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 감소조정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입법화함

---

255) ANTS(GST)A99 29-20

256) 예를 들어 1) 현금주의를 따르지 않는 마르쿠스가 러셀에게 부가가치세 포함 550달러의 장비를 공급하고 2001년 3월 15일에 지급기한이 2001년 4월 15일인 송장을 발행, 분기별 과세기간을 적용받음에 따라 2001년 3월 31일로 끝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함. 2001년 4월 16일에 채권이 연체되었으며 2002년 4월 16일에도 여전히 회수하지 못하여 대손처리는 하지 않고 법적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지급을 요청함. 마르쿠스는 2002년 6월 30일로 끝나는 과세기간에 감소조정을 함(GST Ruling GSTR 2000/2, 49AA-49AD문단). 2) 현금주의를 따르지 않는 그렉은 사이먼에게 부가가치세 포함 550달러의 장비를 공급하고 2001년 5월 15일에 2001년 6월 15일이 지급기한인 송장을 발행, 분기별 과세기간을 적용받음에 따라 2001년 6월 30일로 끝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함. 그렉은 3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추심을 위하여 안토니아를 고용하였고 안토니아는 그렉에게 연 3회(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에 보고를 받음. 안토니아는 2001년 10월 16일에 추심에 들어갔고 지급기한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2002년 6월 16일에도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2002년 8월 31일에 그렉에게 보고함. 그렉은 해당 채권이 12개월 이상 연체되었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8월 31일에 알았고, 이에 2002년 9월 30일로 끝나는 과세기간에 감소조정을 함(GST Ruling GSTR 2000/2, 49BA-49BE문단)

257) Addendum GSTR 2000/2A에서 '12개월이 경과한 때'의 문구를 '12개월 이상 경과되었음을 알게된 때'로 변경함

258) 김경조·유지선(2021), p. 23.

259) A New Tax System (Goods and Services Tax) Bill 1998 Div21-5(3)

- 공급자가 거래상대방에게 대손으로 처리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대금 지급을 유도하고 싶은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음<sup>260)</sup>
-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기록(adjustment notes)<sup>261)</sup>을 발행해야 하나 대손에 대한 조정은 조정기록 발행 대상인 조정사건 또한 아님
- 회수불능채권으로 감소조정 하는 금액은 상각하였거나 회수기일이 12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금액의 1/11임
  - 감소조정을 적용하는 공급이 부분 과세인 경우에는 부분 과세가 아님을 전제로 하는 전체 조정금액(full adjustment)에 과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sup>262)</sup>
- 회수불능채권에 대하여 감소조정 한 이후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게 된 경우에는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증가조정이 필요함<sup>263)</sup>

#### 다. 공급받는 자에 대한 대응조정

- 납세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이후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의 감소 조정에 대응하는 증가조정이 필요함<sup>264)</sup>
  - 공제가 가능한 매입(creditable acquisition)<sup>265)</sup>이 있었을 것
  - 해당 거래 관련 부가가치세를 과세기간에 신고하고 공제받았을 것

260) IBFD, “Improving VAT/GST - Designing a Simple and Fraud-Proof Tax System - Chapter 2: Australia - Books (Last Reviewed: 31 July 2013),”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ivg\\_c02](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ivg_c02), 검색일자: 2023. 12. 29.

261) ANTS(GST)A99 29-75

262) ANTS(GST)A99 136-5

263) ANTS(GST)A99 21-10

264) ANTS(GST)A99 21-15

265) ANTS(GST)A99 11-5 공제 가능한 매입이란 공제목적(creditable purpose)으로 무언가를 취득하여야 하고, 과세대상 공급(taxable supply)이 이루어져야 하며, 공급의 대가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무가 있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등록의무가 있어야 함

- 대손으로 처리를 한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매입세액공제 시기와 동일 과세기간인 경우에도 매입세액과 조정금액은 상계처리 없이 별도로 기재하여 사업활동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대가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못했을 것
  - 장부상 대손처리 되었거나 회수기일이 12개월 이상 지났음을 인식하였을 것
- 공급받는 자의 조정은 해당 사실을 인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귀속시기로 함<sup>266)</sup>
  - 공급자가 대손처리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인식한 때에 증가조정 함
  - 회수기일이 12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의 경우 12개월 이상이 지났음을 인식한 때에 증가조정 함<sup>267)</sup>
- 회수불능채권으로 증가조정 하는 금액은 상각되었거나 회수기일이 12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금액의 1/11임
  - 부분적으로 공제 가능한 매입의 경우에는 전체 조정금액에 공제대상 비율(extent of creditable purpose)과 대가의 비율(extent of consideration)을 곱하여 계산함<sup>268), 269)</sup>
- 회수불능채권에 대하여 증가조정 한 이후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한 금액의 1/11만큼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감소조정이 필요함<sup>270)</sup>

---

266) ANTS(GST)A99 29-20

267) Addendum GSTR 2000/2A에서 '12개월이 경과한 때'의 문구를 '12개월 이상 경과되었음을 알게 된 때'로 변경함

268) ANTS(GST)A99 136-10

269) 예를 들어 X가 Y와 Z에게 11,000달러의 과세공급을 하였으며 Y와 Z는 각각 대가의 20%, 80%를 부담하기로 하고 Y는 1,100달러를 지급, Z는 5,500달러를 X에게 지급함. X가 4,400달러를 대손 처리하고 감소조정 하였을 때 Y가 증가조정 해야 하는 금액은 4,400달러×1/11에 공제대상 비율 100%와 Y가 지급해야할 나머지 대가의 비율 1,100/4,400만큼 곱한 금액인 100달러임(GST Ruling GSTR 2000/2, 72문단)

270) ANTS(GST)A99 21-20

## V. 국제비교 및 시사점

### 1. 국제비교

#### 가. 대손세액공제 제도의 개요

- 조사대상국 중 우리나라, 영국은 부가가치세 도입 이후 일정기간 경과 후에 대손세액 공제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는 부가가치세 도입시점부터 대손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함
-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제 도입 이후 17년 후에, 영국은 부가가치세제 도입 후 5년 후에 대손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함
  - EU 회원국에 1977년 도입된 EU 부가가치세 제6차 지침에 부합하게끔 1979년 까지 국내법을 개정할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영국은 이를 반영하여 도입한 것으로 보임<sup>271)</sup>
- 우리나라, 영국, 일본, 호주는 대손세액공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EU 지침과 프랑스, 네덜란드는 공급가액의 조정을 다루는 규정에서 대손세액공제를 함께 규정하고 있음
- EU 지침과 프랑스, 네덜란드는 공급 이후 취소, 거절, 전부 또는 일부분 미지급, 가격의 감액이 발생한 경우를 동일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음

---

271) Van Doesum et al.(2020), p. 15.

- 우리나라는 대손세액공제를 특례로 명명하고 있으나, 그 외의 국가에서는 별도의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음
  - 우리나라는 납부세액 부분의 공제특례 규정으로 대손세액공제를 규정함
    - 대손세액공제를 부가가치세법상 특례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음
  - 영국은 공제, 감면, 환급 부분에서 대손세액공제(bad debt relief)를 규정함
    - 부가가치세법 Part II, 공제, 감면, 환급 부분에서는 대손세액공제뿐만 아니라 영세율, 면세, 자본재 환급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대손세액공제가 특례인지 여부는 불분명함
  - 일본은 대손세액공제를 일반적인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매입세액공제 등을 다루고 있는 제3장 세액공제 등에서 대손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조항 이름으로 특례임을 명시하고 있지만 대손세액공제에 대해서는 특례로 언급하고 있지 않음
  - 프랑스, 네덜란드는 공급 이후 취소, 거절, 전부 또는 일부분 미지급, 가격의 감소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세금환급 규정에서 대손세액공제를 규정함
  - 호주는 대손세액공제를 부가가치세법의 기본규칙으로 보고 있음
    - 호주 부가가치세법은 기본규칙에 대한 장(Chapter 2. The basic rules)에서 대손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음
  
- 대손세액공제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제의 예외적인 특례 사항으로 보고 있으나 EU는 부가가치세 중립성 실현을 위한 근본원칙, 일본은 부가가치세 과세요건 불충족에 따른 조정사항으로 보고 있음
  - 우리나라 법원은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제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써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판시함
  - ECJ는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중립성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음
    - EU 회원국 및 구 회원국인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도 이와 같은 견지에서 대손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됨

- 일본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요건인 공급의 유상성 요건을 대손으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한다는 의견이 있음

〈표 V-1〉 주요국의 대손세액공제 제도 개요

구분	대한민국	EU 지침	영국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
VAT 도입시기	1977년	1967년	1973년	1989년	1954년	1969년	2000년
대손세액공제 도입시기	1994년	1967년	1978년	1989년	1954년	1969년	2000년
입법체계	특례규정	일반규정	불분명	일반규정	일반규정	일반규정	일반규정

자료: 본문 제VI장 내용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 나. 대손세액공제 사유

### 1) 규정 방식

- 조사대상국의 대손세액공제 사유를 규정하는 방식은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유형,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유형 및 이 둘의 혼합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우리나라, 일본, 영국은 대손세액공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통해 대손세액공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일본은 소비세법, 소비세법 시행령 및 소비세법 시행규칙에서 대손세액공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영국은 부가가치세법을 통해 대손세액공제 사유를 열거하고 있음
- 프랑스는 채권이 확정적으로 회수불능인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한다는 정의 규정만을 두고 있음

- 조세일반법은 납세자가 회수불능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기본원리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적인 대손사유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보임
- 네덜란드와 호주는 혼합형 국가로 분류될 수 있는데 정의 규정과 구체적인 대손세액공제 사유를 동시에 두고 있음
  - 네덜란드와 호주는 채권이 회수불능인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정의 규정과 구체적 대손세액공제 사유를 모두 규정하고 있음
    - 네덜란드는 포괄적 정의 규정만을 두고 있었으나, 절차를 단순화하고 법적 안정성을 제공할 목적으로 2017년에 구체적 대손세액공제 사유를 추가함

## 2) 대손세액공제 사유의 내용

- 조사대상국 중 우리나라와 일본은 대손세액공제 사유를 다양하게 열거하고 있지만 영국, 네덜란드, 호주는 대손세액공제 사유가 단순함
  -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사유는 16가지임(법인사업자 기준)
  - 일본의 소비세법상 대손세액공제 사유는 9가지임
  - 영국은 대손세액공제 사유가 한 종류임
  - 네덜란드, 호주는 포괄적 정의 규정과 더불어 한 종류의 구체적 대손세액공제 사유를 두고 있음
- 조사대상국 중 우리나라, 영국, 네덜란드, 호주는 회수기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채권은 회수 불가능에 대한 입증 없이 대손세액으로 인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30만원 이하의 소액채권,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회수 불가능에 대한 입증 없이 대손으로 인정함

- 2020년 세법개정 시 중소기업의 세부담 경감 목적으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은 별도의 회수 불가능에 대한 입증 없이 대손으로 인정하도록 개정함
  - 영국은 공급일 등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에 대해서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함
  - 네덜란드와 호주는 지급약정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채권에 대해서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함
- 조사대상국 중 우리나라는 법인 규모를 고려하여 대손세액공제 사유를 차등 적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아래의 대손사유는 대해서는 중소기업에만 적용함
    - 중소기업의 경우에만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외상매출금, 회수기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외상매출금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회수 불가능에 대한 입증 없이 대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그 외, 영국,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는 법인 규모에 따라 대손세액공제 적용요건을 차등하고 있지 않음
- 조사대상국 중 우리나라는 소액채권에 대해서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채무자별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인 채권에 대해서는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별도의 회수 불가능에 대한 입증 없이 대손으로 인정함
  - 영국,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의 소액채권에 대한 차등적용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 일본은 소액채권에 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채권총액이 회수비용에 미달한 경우로서 독촉하여도 변제하지 않는 경우 대손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소액채권의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영국, 네덜란드, 호주는 비교적 이른 시일 내에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바, 소액 채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와 일본은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의 대손사유가 거의 동일한 반면, 영국, 네덜란드, 호주는 법인세법은 포괄적이지만 부가가치세법은 단순화되어 있음
  -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사유는 법인세법의 준용을 원칙으로 하되, 출자전환채권 관련해서만 부가가치세법상 독자적 대손세액공제 사유를 추가로 두고 있음
  - 일본은 소비세법에서 법인세법과는 별도로 대손세액공제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내용이 법인세법과 거의 동일함
  - 영국, 네덜란드, 호주는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건전한 상관행에 비추어 채권별로 회수 불가능 여부를 사실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은 특정기한을 초과한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으로 인정하고 있음
    - 호주와 네덜란드는 미지급기간이 특정기한 내에 있다 하더라도 회수 불가능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대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호주는 부가가치세법상 회수 불가능 여부를 판단하는데 법인세법상의 기준을 차용하여 판단하고 있음
    - 네덜란드가 부가가치세법상 회수불능 여부를 판단하는데 법인세법상의 기준을 차용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 프랑스는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 모두 대손사유를 회수 불가능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둘의 판단기준이 동일한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 3) 대손세액공제 시기

- 조사대상국 중 일본, 프랑스는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영국, 네덜란드, 호주는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적용하고 우리나라는 혼합형으로 보임

- 일본은 법률상 채권이 소멸하거나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대손이 확실한 때에, 프랑스는 회수불능이 확정적일 때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음
- 영국, 네덜란드, 호주는 지급약정일로부터 6개월 및 1년 후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음
  - 영국은 공급일 등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한 채권에 대해서 납세자가 대손으로 분류하는 때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음. 다만, 6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수불능이 확실하더라도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음
  - 네덜란드와 호주는 공급일 이후 언제든지 회수불능이 확실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약정일 이후 1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회수불능으로 간주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회수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사실상 회수불능이 확정적일 때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즉, 우리나라는 사실상 회수불능이 확정적일 때에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2020년부터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기존에 비하여 이른 시기에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것으로 보임<sup>272)</sup>

---

272) 2020년 이전에도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어음상의 채권,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금 및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소액채권에 대해서 납세자의 회수 불가능에 대한 입증 없이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2020년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별도의 회수 노력 없이도 소멸시효 완성 등 확정적 대손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상당 부분의 중소기업의 대손세액공제가 동 사유를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표 V-2〉 주요국의 대손세액공제 사유 및 시기

구분	대한민국	영국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
규정방식	구체적	구체적	구체적	포괄적	혼합	혼합
사유 및 시기 <sup>1)</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멸시효 완성</li> <li>• 회생계획 인가결정 등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li> <li>•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면책 확정</li> <li>• 법률상 경매 취소된 압류채권</li> <li>•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 확인</li> <li>•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불능</li> <li>•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어음상의 채권 및 증소기업의 외상매출금</li> <li>• 회수기일 2년 이상 경과한 증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li> <li>• 재판상 화해 등에 의한 회수불능</li> <li>• 회수기일 6개월 이상 경과한 소액채권</li> <li>• 금융감독원장에게 승인받은 금융회사의 채권 등</li> <li>• 증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특정 창업자채권</li> <li>• 관련 법령에 의한 출자 전환채권의 장부가액과 시가 차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급일 등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으로 납세자가 대손으로 분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법령에 의한 갱생계획 인가결정</li> <li>• 관련 법령에 의한 재생계획 인가결정</li> <li>• 특별청산협정 인가결정</li> <li>• 채권자집회 협의결정에 의한 소멸</li> <li>• 공정한 제3자(금융기관 등)의 알선에 의한 소멸</li> <li>•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 지속으로 변제불가능하다 인정하여 서면으로 채무면제</li> <li>• 채무자의 재산상황, 지급능력 등으로 보아 전액 회수할 수 없는 것이 명백</li> <li>• 거래정지 후 1년 이상 경과</li> <li>• 채권총액이 회수비용에 미달하여 독촉하여도 변제가 없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수불능</li> <li>• 지급약정일로부터 1년 경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수불능</li> <li>• 지급약정일로부터 1년 경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수불능</li> <li>• 지급약정일로부터 1년 경과</li> </ul>
법인세법상 대손금과의 관계	준용	별도 규정	별도 규정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거의 동일)	별도 규정	별도 규정	별도 규정

주: 1) 우리나라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별상 대손사유가 상이한 바, 법인사업자의 대손세액공제 사유를 기재함  
 자료: 본문 제VI장 내용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 다. 대손세액공제 제도 운영방식

- 조사대상국 중 프랑스를 제외한 국가들은 모두 과세대상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 프랑스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현금주의회계를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용역의 공급은 대손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님
    - 납세자가 용역의 공급에 대해 발생주의회계를 선택하여 적용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영국, 일본, 호주는 소규모납세자를 대상으로, 네덜란드는 주로 최종소비자를 고객으로 하는 특정 업종 등을 대상으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한 현금주의회계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우리나라를 포함한 조사대상국 모두 대손세액공제는 확정일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신청할 수 있음
  - 네덜란드는 2017년 이전까지는 정기 부가가치세 신고와는 별도의 신고를 통해서만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2017년 조세제도를 단순화하면서 정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공제받을 수 있게 됨
    - 다만, 팩터링 채권은 정기 신고와 별도로 신고해야 함
  - 우리나라, 일본, 네덜란드, 호주는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영국, 프랑스는 매입세액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 영국은 대손세액공제의 공제 가능 기한을 두고 있지만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는 별도의 기한을 두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는 공급일로부터 10년 이내에만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음
  - 영국은 공급일 또는 지급약정일 중 늦은 날부터 4년 6개월 이내에만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음

- 프랑스는 대손확정일의 익년 12월 31일까지만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는 대손세액공제만을 위한 별도의 기한에는 해당하지 않음
    - 프랑스는 공급일의 익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하는 경우에만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일본, 네덜란드, 호주는 대손세액공제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공제 가능 기한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조사대상국 중 프랑스만이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것임을 공급받는 자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프랑스는 공급자에게 최초 송장에 ‘미지급 상태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기재한 사본을 공급받는 자에게 송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통지의무는 부정행위 방지 및 세수손실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부여된 것으로 써 미이행 시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영국, 네덜란드, 호주는 공급받는 자의 기공제세액 반환은 공급자의 대손세액공제와 무관하게 결정되므로, 공급받는 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됨
    - 실제로 영국은 2003년까지는 공급자에게 통지의무를 부여하고 있었으나, 2003년부터 공급자의 대손세액공제와 공급받는 자의 기공제세액의 연결고리를 단절하면서 공급자의 통지의무를 폐지함
  - 우리나라는 공급자에게 통지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공급받는 자가 스스로 해당 내용을 인지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는 방식을 취함
  - 일본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공급받는 자로부터의 추징규정이 없으므로 공급자에게 통지의무를 지을 필요가 없을 것임
- 프랑스를 제외한 조사대상국은 모두 대손세액공제 적용 후 대가를 회수하는 경우 이미 감소된 매출세액을 조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우리나라를 포함한 관련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 모두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기감소된 매출세액을 증가조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프랑스는 대손세액공제 적용 후 대가를 회수하는 경우에 대한 조정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데, 이는 회수불능이 확정적일 때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생각됨
-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단순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로는 우리나라, 영국, 일본이 있으며, 이 중 우리나라만이 이들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음
- 영국은 현금주의회계를 적용받는 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단일과세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함
  -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는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단순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 영국, 호주는 양도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지만 프랑스, 네덜란드는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함
- 영국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으나, 당초 공급자가 해당 채권을 재양도받은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프랑스와 네덜란드는 양도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함
    - 프랑스는 채권 양도자에게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함
    - 네덜란드는 당초 양도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았으나, 2017년 세법개정을 통하여 채권 양수인에게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함
- 그 외, 우리나라와 일본은 공급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 이전에 발생한 채권과 관련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지 않음
- ECJ는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폐업한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음

〈표 V-3〉 주요국의 대손세액공제 제도 운영방식

구분	대한민국	영국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
공제대상	과세대상 재화·용역의 공급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한 공급	과세자산의 양도·대여, 역무의 제공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 <sup>1)</sup>	과세대상 재화·용역의 공급	과세대상 재화·용역의 공급
공제방법	대손확정일의 확정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차감	대손확정일의 신고 시 매입세액에 가산	대손확정일의 확정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차감	대손확정일의 신고 시 매입세액에 가산	대손확정일의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차감	대손인식일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감소조정
공제기한	공급일로부터 10년 이내	공급일 또는 지급약정일 중 늦은 날로부터 4년 6개월 이내	N/A	N/A	N/A	N/A
통지의무	X	X <sup>2)</sup>	X	○	X	X
회수 시 조정규정	회수일의 확정신고 시 매출세액에 가산	회수일의 신고 시 매출세액에 가산	회수일의 신고 시 매출세액에 가산	N/A	회수일의 신고 시 매출세액에 가산 <sup>3)</sup>	회수일의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증가조정
단순납부제도 적용자 <sup>4)</sup> 의 적용 여부	X	○	○	N/A <sup>5)</sup>	N/A <sup>5)</sup>	N/A <sup>5)</sup>
그 외 주요 적용배제대상	공급자가 폐업한 경우, 양도채권	공급가액이 시가보다 높은 채권, 양도채권	공급자가 폐업하거나 면세사업자가 된 경우	확인되지 않음	확인되지 않음	양도채권

주: 1) 프랑스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현금주의회계에 의하므로 용역거래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음(다만, 납세자가 발생주의회계를 선택한 경우에는 용역거래에 대해서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2) 2003년 1월 1일 이전까지는 공급받는 자에 대한 통지의무가 있었으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공급받는 자가 대손세액공제와는 무관하게 미지급금에 대해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환급하게 개정됨에 따라 통지의무를 폐지함

3) 네덜란드는 2017년 대손세액공제 제도 개정 이전에는 회수 불가능이 확정적인 경우에만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대손세액공제 후 대가의 회수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았음

4) 단순납부제도 적용자란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출세액에서 실제 발생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이 아닌 업종별 부가가치세를 등 단순한 방식을 통해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방식이 적용되는 사업자를 말함(예: 우리나라의 간이과세자)

5)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단순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273), 274), 275)

자료: 본문 제VI장 내용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 라. 공급받는 자에 대한 대응조정

- 일본을 제외한 조사대상국 모두 상당기간 대가를 미지급한 공급받는 자에 대한 조정 규정을 두고 있음
  - 우리나라는 1994년 대손세액공제 도입 당시부터 공급받는 자에 대한 대응조정을 두고 있었음
  - 영국은 1978년 대손세액공제 도입시점에는 공급받는 자에 대한 대응조정이 없었으나 세법개정을 통해 1996년 11월 26일 이후 공급분부터 대응조정을 적용함 - 대손세액공제 규정을 악용한 조세회피 및 남용계획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응규정을 도입함
  
- 우리나라와 프랑스는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공급자에게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공급받는 자의 기공제세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프랑스는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것을 알리는 송장 사본을 송부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기공제세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영국, 네덜란드, 호주는 공급자의 대손세액공제 적용 여부와 별도로 일정기간을 경과하도록 대가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스스로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
  - 영국은 공급일 또는 지급약정일 중 늦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대가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신고 시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

273) IBFD - Netherlands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12. Special Schemes - 12.1. Small businesses (Last Reviewed: 10 September 2023)

274) 안창남·손승연(2019), pp. 104~106.

275) 최정희(2019), p. 131.

- 2003년 이전까지는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만 공급받는 자의 기공제세액을 반환하도록 하였으나, 2003년부터는 공급자의 대손세액공제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6개월 경과 채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 네덜란드는 공급받는 자가 판단하기에 미지급할 것이 확실시되는 날 또는 지급약정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중 빠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신고 시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반환하도록 함
  - 참고로, 네덜란드는 2017년 대손세액공제 사유를 1년 초과 미지급으로 단순화하기 이전에도 지급약정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도록 미지급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었음
- 호주는 공급자가 대손처리를 한 것을 인지한 날 또는 지급약정일로부터 12개월을 경과한 날 중 빠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신고 시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급받는 자에 대한 반환규정을 두고 있는 조사대상국 중 영국은 공급일 등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공급받는 자의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반환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표 V-4〉 주요국의 공급받는 자에 대한 대응조정

구분	대한민국	영국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
대응조정 규정 유무	○	○	x	○	○	○
공급자의 대손세액공제와의 관계	필요조건	무관	N/A	필요조건	무관	무관
구체적 내용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기공제세액 반환	6개월 이내 대가 미지급 시 기공제세액 반환	N/A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기공제세액 반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지급이 확실시 되는 때에 기공제세액 반환</li> <li>• 1년 이내 대가 미지급 시 기공제세액 반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급자가 대손처리를 한 것을 인지한 때에 기공제세액 반환</li> <li>• 1년 이내에 대가 미지급 시 기공제세액 반환</li> </ul>
면제규정 유무	x	○	N/A	x	x	x

주: 1)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공급자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공급받는 자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자료: 본문 제VI장 내용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 2. 시사점

### 가. 대손세액공제의 성격에 대한 재고(再考)

- 우리나라는 대손세액공제를 공급자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특례규정으로 보고 있음
- 원칙적으로 추후 대가 수취 여부와 무관하게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나, 일정한 상황에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하지 못하는 공급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대손세액공제가 제정된 것으로 해석됨

- 공급가액도 회수하지 못한 사업자에게 공급받은 자의 몫인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공급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서 대손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함<sup>276)</sup>

○ 이와 같은 견지에서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제의 예외 규정으로 분류됨

□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의 소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목으로써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대가 이상으로 과세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손세액공제란 부가가치세제의 예외 규정이 아닌 부가가치세제의 근본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로도 볼 수 있음

○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의 소비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최종소비자가 궁극적으로 부담할 것을 전제로 공급자에게 거래징수하도록 하는 조세임<sup>277)</sup>

○ EU는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조세중립성을 부가가치세제의 근본원칙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중립성 원칙의 훼손은 부가가치세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sup>278)</sup>

○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조세중립성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일부 판례에서 조세중립성을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경우가 확인됨

- 단말기 보조금,<sup>279)</sup> 마일리지 관련 판결<sup>280)</sup> 등에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대가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논지에서 판시함

○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공급일 이후 계약의 해제·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의 가감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표준을 조정하도록 하는 규정은<sup>281)</sup> 부가가치세 중립성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되며, 조세중립성 차원에서는 대손세액공제 또한 이들과 결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276) 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4헌바423 결정

277) 부가가치세액의 실제 거래징수의 문제가 아닌 이를 전제로 제도가 설계되었다는 측면을 말함

278) 권형기·이정환(2023), p. 242.

279)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280)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28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 우리나라를 제외한 조사대상국 모두 이와 같은 견지에서 대손세액공제를 특례규정이 아닌 일반규정으로 보는 것으로 생각됨
  -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의 도입모델로 평가되는 EU 지침은 대손세액공제를 공급 이후 취소, 거절 등의 사유로 과세표준이 감소한 경우와 동일한 견지에서 부가가치세 중립성의 실현을 위한 도구로 보고 있음
    - EU는 부가가치세액은 공급자가 실제로 수취한 가격에 엄격하게 비례해야 하며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제의 중립성이 보호되는 것으로 이해함<sup>282)</sup>
  - EU 회원국이 아닌 일본과 호주도 부가가치세의 기본원리로 대손세액공제를 바라보는 것으로 판단됨
  
- 부가가치세의 특성을 고려한 대손세액공제의 성격에 대한 재논의를 통해 대손세액공제를 특례가 아닌 부가가치세 기본원리로 이해하는 경우에는 대손사유, 대손세액공제 배제대상 등 대손세액공제 제도 전반에 대한 포괄적 검토가 필요함
  - 현행 부가가치세제가 대손세액공제를 특례로 간주함에 따라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대손세액공제 요건의 차등적용, 폐업자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배제 적용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 그러나 대손세액공제를 부가가치세의 근본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 등의 정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그 외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책임의 비중 등 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나. 대손세액공제 사유의 독자적 규정 필요

- 부가가치세법은 당초 대손세액공제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6년 대손세액공제 사유를 확대할 목적으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대손사유를 준용하는 방식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함

282) Van Doesum et al.(2020), pp. 276~278.

- 법 개정 당시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사유가 법인세법 등의 대손사유에 비하여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범위의 확대를 목적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함
- 그러나 입법 취지와 목적이 상이한 세목의 대손사유를 일치시킴에 따라 대표적으로 출자전환채권의 대손세액공제 관련 조세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2019년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고 법인세법 등의 준용 사유 이외에 부가가치세법상 독자적인 대손사유를 추가하였음
  - 부가가치세법이 법인세법 등을 준용함에 따라, 채무의 출자전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가 의도한 바와 다른 결과를 도출하는 문제가 발생함
    - 법인세법은 출자전환 시점에는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추후 주식의 처분 시점으로 과세를 이연할 목적으로 출자전환주식에 대한 취득가액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였음
    - 이로 인하여 출자전환 시점에 사실상 채권의 회수불능이 확정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9년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여 출자전환채권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 독자적으로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함
- 그런데도 현행 부가가치세법이 법인세법 등의 대손사유를 준용함에 따라 대손세액공제의 시기, 개인과 법인사업자의 대손세액공제 사유의 불일치 등의 문제 소지가 여전히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부가가치세법은 법인세법 등의 대손사유를 준용하고 있으나 대손세액공제 시기에 대해서는 준용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납세자의 혼동이 발생하고 있음<sup>283)</sup>
  -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대손사유가 불일치하는 경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간에 부가가치세 세무 처리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함

---

283) 김경조·유지선(2021), pp. 11~19.

- 소득세법은 법인세법상의 대손사유를 선택하여 준용하는 방식으로 입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상 대손사유는 한정 규정에 해당하지만 법인세법상 대손사유는 예시 규정으로 볼 수도 있는 바,<sup>284)</sup> 양자 간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2006년 당시의 개정목적은 고려하되 부가가치세법상 독자적으로 대손세액 공제 사유를 규정하여 법적 안정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논란의 여지를 제거할 필요가 있음

- 2006년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사유를 법인세법 등을 준용한 것은 입법 기술상의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임<sup>285)</sup>
- 2019년 출자전환채권 관련 부가가치세법상 독자적인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소득과세와 소비과세의 대손세액공제 사유가 상이할 수 있음을 이미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음<sup>286)</sup>
- 주요국의 사례에 비추어 보아도 조사대상국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사유는 법인세법 등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일본은 대손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과세와 소비과세의 대손사유가 유사하나, 개별 세법에서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영국, 호주, 네덜란드는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사유를 법인세법과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음
  - 독일은 소득과세와 소비과세 모두 회수 불가능성을 대손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회수 불가능성을 판단하는데 소득과세와 소비과세의 기준을 다르게 보고 있음<sup>287)</sup>

284) 대법원 2017. 04. 27. 선고 2017두31637 판결(한편, 서울고등법원 2022.09.23. 선고 2021누70341 판결은 법인세법 또한 열거 규정인 것으로 판시함)

285) 황남석(2023), p. 280.

286) 이정란(2019), p. 251.

287) 황남석(2023), pp. 276~278.

## 다. 대손세액공제 사유의 유형화

- 우리나라는 총 16개의 대손세액공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1994년 최초 도입 당시의 대손세액공제 사유는 총 4가지였으나, 이후 사업자의 자금부담 및 세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대손세액공제 사유를 지속해서 확대함
  - 조사대상국 중 우리와 같이 구체적으로 대손세액공제 사유를 규정하는 일본의 대손세액공제 사유는 총 9개이며, 영국, 네덜란드, 호주는 대손세액공제 사유가 단순함
  
- 그러나 다양한 대손세액공제 사유를 열거함에 따라 납세자의 조문 이해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크며 대손세액공제의 활용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
  -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대해 법인세법 등을 준용함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상 독자적 규정을 두고 있음
  - 대손세액공제 사유의 취지가 명시되지 않은, 지나치게 다양한 열거는 납세자의 조문 접근성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음
    - 납세자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을 찾아 보아야 하며, 법인세법상 다양한 대손세액공제 사유 중 해당하는 사유를 찾고 적용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음<sup>288)</sup>
  
- 따라서 현행 대손세액공제 사유를 입법목적별로 유형화하여 납세자의 조문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단기적으로 현재의 대손세액공제 사유를 그 취지별로 범주화하여 납세자의 조문 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을 것임
    - 예를 들어, 법적 청구권이 소멸한 사유의 유형화, 회수 불가능성에 대한 입증 필요 사유의 유형화, 객관적 조건의 충족에 따른 대손사유 유형화 등의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288) 과거 10년 동안의 국세통계 자료상 법인사업자보다 일반사업자의 대손세액공제 활용 건수가 적은 사유 중 하나로 조문의 복잡성도 생각해볼 수 있음

- 참고로, 2013년 부가가치세법 전면 개정 시에 가산세 규정을 유형별로 분리하여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을 정비한 바 있음<sup>289)</sup>
- 장기적으로 부가가치세의 특성, 조문 활용도 등을 감안하여 대손세액공제 유형을 단순화하는 방향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예를 들어 네덜란드와 호주는 모든 기업에 대해 회수기일로부터 1년을 경과한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되, 별도의 포괄 정의 규정을 두어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회수불능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단순화된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라. 대손세액공제 기한의 폐지

- 우리나라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기한에 10년의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제한을 두는 것이 납세자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적절한지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채권이 대손으로 확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함
- 우리나라는 당초 공급일로부터 3년의 공제기한을 두고 있었으나, 이후 두 차례의 개정을 거쳐 2020년도부터는 대손세액공제 기한을 10년으로 확대하였음
  - 1996년도에 5년으로 확대하고 2020년도에 10년으로 확대 개정함
- 그러나 여전히 기타 요건을 모두 충족함에도 대손세액공제 기한의 경과로 인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실로 파산선고일로부터 파산종결 시까지 10년의 시간이 걸려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거나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아 민법상 장기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공제기한이 경과한 후 대손으로 확정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함<sup>290)</sup>

289) 법제처, 구 부가가치세법(법률 제11873호, 2013. 6. 7.,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채권자로서의 권리 보존을 추구하려면 납세자의 권리를 비자발적으로 포기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음
- 2020년 대손세액공제 기한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해당 기한을 10년으로 제한할 타당한 근거를 찾기가 어려움
  - 2020년 당시 판결, 재판상 청구, 압류 등으로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 연장됨에 따라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공제 기한을 10년으로 완화함
  - 그러나 대손의 확정이 10년을 경과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채권회수를 위해 장기간 노력한 납세자의 권리구제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음
  - 채권의 회수 불가능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대손세액을 공제받으려는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공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대손으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데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임
- 주요국의 사례에 비추어 보아도 조사대상국 중 영국을 제외한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는 모두 공제기한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 영국은 지급약정일 또는 공급일 중 늦은 날로부터 4년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하나 대손사유 자체가 단순하여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영국은 공급일 등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대손으로 처리할 수 있음
  -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는 공제할 수 있는 기한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대손세액공제 기한이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채권회수를 위해 노력한 납세자에 대한 역차별이 되지 않도록 세무 행정상의 부담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 대손세액공제 기한을 10년으로 제한하는 데 타당성을 찾기 어려우므로 1996년, 2020년 대손세액공제 기한의 확대 후 발생한 세무 행정상 애로사항 등을 검토하여 중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 마. 공급받는 자의 장기 미지급채무 관련 매입세액의 반환규정 도입

-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응조정으로 공급받는 자는 공제 받았던 매입세액을 반환해야 함
  - 공급받은 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시점에도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공급 받은 자가 공급일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대금을 지급할 것을 전제로 함
  - 대손세액공제 관련 매입세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공급받는 자에게는 부당이득이 부여되는 것이며, 이는 곧 국고손실로 이어짐
- 그러나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매입세액 반환규정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됨
  - 본문 제Ⅲ장의 신고 현황에서 살펴보았듯 공급받는 자로부터의 기공제세액에 대한 자진신고는 기대하기 어려움
  - 통계상 대손세액공제 관련 매입세액의 반환비율에 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나 과세관청이 추후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해도 공급받는 자의 경제적 사정상 매입세액을 반환받기 어려울 것임
    - 현재 인정되고 있는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따라 대손이 인정될 정도인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이미 폐업하였거나 도산하여 국가가 실질적으로 기공제세액을 반환받기 어려울 것임<sup>291)</sup>
    - 이를 악용한 공급받는 자의 부당이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291) 오윤(2018), p. 620.; 이창희(2019), p. 1038.

- 대손세액공제 인정 요건을 완화하여 회수기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채권을 대손 사유로 하는 조사대상국들은 공급자의 대손세액공제를 쉽게 하는 동시에 공급받는 자에 대해서 강화된 대응을 하는 것으로 보임
  - 영국, 네덜란드, 호주는 공급자의 대손세액공제와 무관하게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공급받는 자가 스스로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
    - 네덜란드는 회수 불가능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대손으로 인정하던 2017년 이전부터 대손세액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기한 미지급채무에 대한 매입세액 반환 규정을 운영하고 있었음
    - 영국과 호주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대손세액공제와 공제세액 반환 시점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공급받은 자가 스스로 매입세액을 반환하도록 한 규정은 공급받는 자의 부당이득을 제거하고 장기 미지급 상태에 놓인 매입세액의 회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됨
-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공급자의 대손세액공제 적용 범위는 확대해 왔으나, 이에 대응하는 공급받는 자 측면의 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생각되는바, 장기 미지급 채무에 대한 매입세액 관리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대손세액공제의 적용 범위가 좁았던 과거에는 매입세액의 반환 필요성이 크지 않았을 수 있으나, 현재는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지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등 엄격한 조건 없이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사유들이 추가됨
    - 2020년 세법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우 회수 노력에 대한 입증 없이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향후 관련 대손세액공제의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관할 과세관청의 통지를 통해 공급받는 자가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과거부터 그대로임

- 따라서 공급받는 자의 장기 미지급채무에 대한 매입세액의 반환규정을 도입하여 대손세액공제 제도를 재정중립적으로 균형 있게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현재는 공급자에게 제도가 집중되어 있으나 공급받는 자에게 더욱 엄격한 관리를 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부가가치세 중립성 및 세수손실 방지에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을 것임
  - 부가가치세가 거래징수를 전제로 운영되는 세제인 점을 감안하면 일정기한 내 미지급한 매입자의 매입세액 공제권을 선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중립성과 세수보호에 좀 더 효과적일 수 있음<sup>292)</sup>
- 장기 미지급채무 관련 매입세액의 반환은 공급받는 자에 대한 새로운 제재이기 보다는 제도를 균형 있게 운영하는 수단으로 볼 수 있음
- 매입세액 반환대상으로 하는 미지급기간은 상관행상 평균적인 회수기일과 국고의 회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음

---

292) OPINION OF ADVOCATE GENERAL KOKOTT delivered on 4 June 2020 Case C-335/19 E. Sp. z o.o. Sp. k. v Minister Finansów. 46-61문단

## VI. 결론

- 본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대손세액공제 제도의 적용 범위의 지속적 확대로 향후 제도 이용이 활발해질 것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대손세액공제 제도를 주요국의 제도와 비교·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조정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제도를 운영하는 여러 나라에서 대손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조사대상국 중 프랑스와 일본은 대손이 확실한 시점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대손세액공제 적용이 엄격한 편임
  - 영국, 네덜란드, 호주는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입증 없이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다소 완화된 방식으로 단순하게 제도를 운영하는 편임
    - 공급받는 자 측면에서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
  - 영국을 제외한 조사대상국들은 대손세액공제 기한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우리나라는 1994년 대손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한 이후 적용 범위 및 적용 기한을 점차 확대하여 적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조사대상국의 사례를 아래와 같이 비교해볼 수 있음
  - 조사대상국 중에서 프랑스와 일본보다는 까다롭지 않게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나 영국, 네덜란드, 호주보다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 영국, 네덜란드, 호주는 프랑스, 일본과 달리 회수기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채권을 대손세액으로 인정하는 완화된 규정이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손사유는 법인세법을 준용하여 16가지로 조사대상국들에 비해 많은 사유를 열거하고 있고 10년의 공제 가능 기한을 두고 있어 영국, 네덜란드, 호주보다는 제도 적용이 제한적임

- 또한 공급자에 대한 적용은 완화되어 왔지만, 이에 대응하는 공급받는 자에 대한 반환규정의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됨

□ 비교·분석을 토대로 현 우리나라 대손세액공제 제도의 방향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시사점을 제시함

- 대손세액공제를 특례규정이 아닌 부가가치세의 기본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로 인식하는 방향으로 재접근할 필요가 있음
- 다른 법을 준용하여 발생하는 혼동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부가가치세법의 대손세액공제 사유를 독자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우리나라는 대손세액공제 사유가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열거되어있어 사유를 유형화하되 장기적으로는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
- 대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폐지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공급받는 자의 장기 미지급채무 관련 매입세액의 반환규정 도입을 통해 균형 있는 제도 운영이 필요함

## 참고문헌

- 국중호, 『주요국의 소비세제도 (I)-부가가치세: 일본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 권형기·이정환, 「부가가치세법상 '조세중립성 원칙'에 관하여」, 『조세학술논집』, Vol. 39, No. 1, 통권 68호, 한국국제조세협회, 2023, pp. 217~266.
- 김경조·유지선,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제도 개선방안: 대손확정일을 중심으로」, 『세무학연구』, Vol. 38, No. 4, 2021, pp. 9~31.
- 김연화·손혁,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징수제도와 납부시기제도의 개선방안-현금주의제도 인식개념 도입을 중심으로」, 『2022 조세전문가 네트워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 박종수, 『유럽연합(EU)의 부가가치세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2.
- 안창남, 『주요국의 조세제도 -프랑스편-』, 한국조세연구원, 2009.
- 안창남·손승연, 『주요국의 소비세제도 (I)-부가가치세: 프랑스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 오윤, 『세법의 이해』, 박영사, 2018.
- 이정란, 「출자전환과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 20(4), 한국비교공법학회, 2019, pp. 229~255.
- 이창희, 『세법강의 제17판(2019년판)』, 박영사, 2019.
- 임승순, 『조세법 2015년도판』, 박영사, 2015.
- 최정희, 『주요국의 소비세제도 (I)-부가가치세: 호주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 황남석, 「부가가치세의 대손세액공제에 관한 몇 가지 쟁점」, 『법학논집』, Vol. 28, No. 1, 통권 83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pp. 271~291.
- 金井恵美子, 『消費税の実務』, 清文社, 2023.

- 寺崎寛之, 『図説日本の税制』, 財経詳報社, 2022.
- 矢田公一, 「金銭債権の貸倒損失の認定基準について」, 税大論叢58号, 2018, pp. 151~243.
- 中村慈美, 『貸倒損失・債権譲渡の税務処理早わかり』, 大蔵財務協会, 2023.
- Annacondia, Fabiola, *VAT Options Exercised by the Member States*, IBFD, 2023.
- Bouwman, Jan and Martin Boer, “Chapter 15: Netherlands,” *Taxation of Companies in economic and financial distress*, Eleonor Kristoffersson ed., IBFD, 2023.
- Drozdowski, Edgar and Marcin Lachowicz, “Chapter 16: Poland,” *Taxation of Companies in economic and financial distress*, Eleonor Kristoffersson ed., IBFD, 2023.
- Ehrke-Rabel, Tina, “Chapter 4 Topical Report: The VAT Treatment of Companies in Distress,” *Taxation of Companies in economic and financial distress*, Eleonor Kristoffersson ed., IBFD, 2023.
- EY, *Worldwide VAT, GST and Sales Tax Guide*, 2023.
- Heijnen, Bart G.A, *Niet-betaling in de btw: over oninbare vorderingen en onbetaalde schulden in de Europese en Nederlandse btw*,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2018.
- Hemmingsley, Louise and David Rudling, *Tolley’s Value Added Tax 2018-19 Second Edition*, Tolley, 2018.
- HMRC, *Extra-statutory concessions – technical consultation on draft legislation ESC 3.20 VAT: Bad Debt Relief and insolvent businesses: revocation of clawback*, 2015.
- Kristoffersson, Eleonor and Rendahl, Pernilla, 윤지현 외 15인 역, 『유럽부가가치세법』, 박영사, 2021.

- Pearce, Shelagh and Stephen Taylor, *CCH British Tax Guide: Value Added Tax 2017-18*, Croner-i, 2017.
- Te Spenke, Gerrit and Mark J. de Vries, *Taxation in the Netherlands Fourth Edition*, Wolters Kluwer Law and Business, 2011.
- Terra, Ben, Julie Kajus and Zsolt Szatmari, *Commentary on European VAT*, IBFD, 2023.
- Van Abswoude, Kevin, "The Principle of Fiscal Neutrality and Economic Reality in EU VAT: Two Peas in a Pod?," Master's thesis, Lund University, 2022.
- Van Doesum, Ad, "Non-payments in EU VAT Law," CJEU: Recent Developments in Value Added Tax 2021 (Linde 2022), 2022.
- Van Doesum, Ad and Peter Sanderson, "Towards a neutral and effective VAT treatment of bad debt relief," *International VAT Monitor* Jan/Feb 2023, IBFD, 2023.
- Van Doesum, Ad, Herman van Kesteren, Simon Cornielje and Frank Nellen, *Fundamentals of EU VAT Law(Second edition)*, Wolters Kluwer, 2020.
- Wolters Kluwer, *Australian Master Tax Guide(72nd Edition)*, 2023.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s://taxlaw.nts.go.kr/>

국세통계포털, <https://tasis.nts.go.kr/>

네덜란드 국세청, <https://www.belastingdienst.nl/>

네덜란드 정부(Internetconsultatie), <https://www.internetconsultatie.nl/>

네덜란드 정부(Wetten overheid), <https://wetten.overheid.nl/>

영국 법령정보시스템, <https://www.legislation.gov.uk/>

영국 정부, <https://www.gov.uk/>

유럽연합사법재판소, <https://curia.europa.eu/>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

- 일본 e-Gov 법령검색, <https://elaws.e-gov.go.jp/>  
일본 TKC Law Library, <https://ipos.lawlibrary.jp/>  
프랑스 국세청, <https://impots.gouv.fr/>  
프랑스 국세청(BOFiP), <https://bofip.impots.gouv.fr/>  
프랑스 공공재정총국, <https://bofip-archives.impots.gouv.fr/>  
프랑스 법령정보시스템, <https://www.legifrance.gouv.fr/>  
프랑스 Pappers politique, <https://politique.pappers.fr/>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  
호주 법률연방관보, <https://www.legislation.gov.au/>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s://ecos.bok.or.kr/>
- accountingWEB, <https://www.accountingweb.co.uk/>  
BAILII, <https://www.bailii.org/>  
Baker McKenzie, <https://insightplus.bakermckenzie.com/>  
Bloomberg Law, <https://www.bloomberglaw.com/>  
Croner-i Navigate, <https://library.croneri.co.uk/>  
Deloitte, <https://www2.deloitte.com/>  
Doradztwo Podatkowe WTS&SAJA, <https://wtssaja.pl/>  
EY, <https://www.ey.com/>  
EUR-Lex, <https://eur-lex.europa.eu/>  
Grant Thornton Baltic OÜ, <https://www.grantthornton.ee/>  
IBFD, <https://research.ibfd.org/>  
KPMG, <https://assets.kpmg.com/>  
Parlementaire monitor, <https://www.parlementairemonitor.nl/>  
RSM, <https://www.rsm.global/>  
VATUPDATE, <https://www.vatupdate.com/>  
VGD, <https://pl.vgd.eu/>



세법연구 23-05

**주요국의 대손세액공제 비교 연구**

---

발 행 2023년 12월 29일

저 자 홍용기 · 홍성희 · 김수린

발행인 김재진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 7. 15. 제2014-24호

조 판 및  
인 쇄 미래기획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

ISBN 979-11-6655-288-5

---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 주요국의 대손세액공제 비교 연구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 [www.kipf.re.kr](http://www.kipf.re.kr)



9 791166 552885 93320  
ISBN 979-11-6655-288-5